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 일시_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5시30분

○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_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표창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4.16연대

순서

2:00 ~ 2:10	개회 및 환영인사	
2:10 ~ 2:20	영상 상영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2:20 ~ 3:40	①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광우병축분집회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참사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민중총궐기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30
	②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김정욱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최은철 철도노조 전 사무처장 	71

3:40 ~ 3:50	휴식	
3:50 ~ 4:40	③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
	●	강정해군기지 건설 81 박석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운영위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밀양 송전탑 건설 97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④	재개발현장에 대한 경찰력 집행
	●	용산참사 183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4:40 ~ 5:00	●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203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00 ~ 5:30	전체토론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①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

2008년 촛불집회와 경찰¹⁾

서선영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 2008년 촛불집회 개관

2008년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08년 4월 1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금지조치를 할 수 없으며, 연령이나 부위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한다는 한미쇠고기 협상 전격 타결소식이 언론에 보도된다. 이후 5. 2. 청계과장에서 중고생들이 주축이 되어 1차 촛불문화제가 진행된 이후 8. 15. 제 100회 촛불문화제까지 수개월간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폭력은 원시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1) 이 발제문은 2008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20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촛불백서>, 앰네스티의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자료를 참조 및 인용했습니다.

부상을 당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9 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측 부상자만 다음 표와 같았다(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 시위대 부상자수가 1천여명-병원 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기준 시위대 부상자수를 2,500명으로 파악함).

일자	2008.									
	5.31. ~6.1.	6.2.	6.5. ~6.	6.6. ~7.	6.7. ~8.	6.10. ~11.	6.21. ~22.	6.25. ~26.	6.26. ~27.	6.28. ~29.
구호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직접적인 폭력 외에 이른바 명박산성등 차벽의 설치, 파란색 색소가 포함된 물 대포를 살포한후 무차별 검거, 통행권 침해 등 경찰의 인권침해 방식은 다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폭행 직접 가해자와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루어졌으나, 몇 명의 직접 가해자 외에 지휘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 수뇌부는 ‘면책’ 발언을 하며 폭력 진압을 조장하는 모습을 취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은 이 발제문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이 중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 경찰 인권침해 사례

2. 1. 직접적, 원시적 폭행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행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적절할 정도로 원시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집단 린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 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등 경찰의 폭행은 무차별적이었다. 2008. 6. 1. 일명 '전경 군홧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2008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수많은 심각한 경찰의 폭력 중 그나마 동영상이 확인되어 진실이 알려진 경우로 비슷한 수준과 유형의 폭력은 부지기수였다. 그 중 대표적 사례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 전경 군홧발 폭행사건

2008. 5. 31.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경북구역 근처. 갑자기 김모 전경이 원고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머리를 짓밟음. 학생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번만 더 밟히면 죽겠다고 생각되어 전경버스 아래로 기어들어갔는데, 원고가 기어들어간 전경버스가 갑자기 시동을 걸고 앞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다시 전경버스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밖에 없었고 원고가 전경버스 아래로 나오자마자 다시 원고를 발견한 여러 전경들이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시멘트에 내려 쪼은 후 온몸을 군홧발로 짓밟음. 어떤 경찰도 이 상황을 제지하지 않

았고 결국 원고는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의해 겨우 구출됨

○ 후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장봉 폭행사건

2008. 6. 28. 혼자서 촛불집회 참석한 피해자. 6. 29. 새벽 경찰과 시민들이 경찰차량을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갑자기 수백명의 전경들이 차단벽이 경찰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진압 시작. 밀리게 된 시위 참가자들이 시청방향으로 도망치는 아비규환을 외중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자 전경 5-6명이 달려들어 진압봉으로 수차에 걸쳐 온몸 구타.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으나 전경들 계속 폭행. 피해자 실신,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병원 이송

○ 손가락 절지 사건

2008. 6. 26. 금강제화 빌딩 앞. 정차해둔 전경버스 3개가 빠지면서 전경과 시민 대치상황. 경찰 진압과정에서 전경 2명이 앞서서 나와 시민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포되는 상황 발생. 시민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이들을 보호, 피해자도 전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이 섰는데 긴장한 2명의 전경중 1명이 사실상 포위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전경을 피할 목적으로 손을 전경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는데 전경이 손가락을 물어 왼손 중지 중 첫 번째 마디의 3/4 가량 절단. 인근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절단된 손가락 현장 방치되어 결국 봉합수술을 받지 못했음

○ 응급의료 행위중 집단 폭행 사건

2008. 6. 28. 의료봉사단으로 참가. 서울특별시의회 인근에서 경찰 진압 시작. 의료봉사단을 포함 인도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곤봉과 방패를 사용하여 폭력 행사. 부상당한 사람 응급처치 중 갑자기 뛰어나온 전경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끈을 잡아 넘어뜨리고 방패와 전투화 등으로 가격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YMCA 농자행동단 사건

YMCA 사무총장 등 평화적 시위를 위해 완충지대 목적으로 농자 행동단 모집. 2008. 6. 29.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외치며 누움. 경찰 누워있는 농자행동단과 시민들의 다리를 방패로 내리찍으며 진압 시도.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들이 “밟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호소하자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 한 사람이 전투경찰들을 향해 ”무엇하냐,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 전투경찰등 약 100여명이 드러누어 있는 시민들을 방패로 찡고 곤봉으로 때리거나 군화발로 짓이기며 밟고 지나감. 수많은 사람들 부상

○ 인권침해 감시활동중이던 변호사 상해

2008. 6. 25.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중 성명불상 전투경찰대원으로부터 집단 구타. 당시 상황은 선두에 선 시민들이 살수차에서 나오는 물을 맞으며 조금씩 밀려나고 있던 중. 전경중 일부가 갑자기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며 방패를 휘두르자, 피해자는 시민들이 엉켜 다칠까봐 ”천천히“라고 외쳤는데 순간 성명불상의 전경들이 방패로 피해자 얼굴 가격. 두개골 골

절등의 상해를 입고 기절. 뒤이어 오던 전경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군홧발로 차거나 밟고 지나갔고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 2. 경찰 방패를 공격 무기화. 경찰 진압봉 등을 구타도구로 사용

경찰은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 공격도구로 사용했다. 방패 모서리의 고무팩을 벗기고 날카롭게 만든후 직각으로 사람들의 목이나 몸통을 공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경찰 진압봉으로 후퇴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의 머리를 장봉으로 수명이 둘러싸서 내려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시위 참가자를 적으로 간주한 후 경찰 도구를 적극적 공격 무기로 사용한 사례들이다. ” 그 경찰은 내 등 뒤에 있었는데, 내가 돌아서자 그 경찰의 방패 한쪽 끝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것으로 제 코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손, 팔, 옷, 땅바닥에 온통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는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을 때 전경이 제 머리 왼쪽을 방패로 찍었어요. 나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대원이 달려와 저를 치료해줬다고 엄마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그 와중, 10살 된 제 남동생을 잃어버렸어요(나중에 죽음). 30-40분 후 저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어요. 머리가 5cm 찢어졌어요“ 방패에 의해 공격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2. 3. 소화기 분사 및 투척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소화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소화기는 눈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분사된 가스는 시야를 가리면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심지어 경찰은 소화기를 분사용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에 대해 투척하기도 하였다.

2. 4. 물대포에 의한 공격

경찰은 해산명목으로 물대포를 직사 살수했다. 10미터 이내에서 직사살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압의 영향으로 수미터를 "날아갔다"고 증언했다. "물대포와 군중 사이의 거리는 약 5-6m 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얼굴에 맞았어요. 저는 맨 앞에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압은 엄청났어요. 수압이 너무 강해서 2-3m를 날아갔어요. 물대포의 각도는 제 얼굴을 똑바로 겨냥했어요. 나는 땅에 넘어졌어요. 입안에 피가 흥건했어요. 왼쪽 눈이 안보였고 얼굴이 부어올랐어요" 일시적 시력 상실을 겪은 한 집회 참가자의 증언이다. 그 외 고막에 구멍이 나서 청력 상실을 겪는 경우 등 직사살수로 인한 피해는 다수이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폭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등 공격적 진압은 분노의 반응, 경찰과의 우발적 충돌을 더욱 촉발시키는 결과를 만들어갔다.

2. 5. 인권침해감시단, 의료봉사단에 대한 공격

인권침해감시단,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공격도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침해감시중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의 두개골 골절 상해, 응급의료 처치중이던 의사에 대한 공격등이다. 노란 조끼와 녹색 십자가가 그려진 헬멧(응급

구조)를 쓰고 있었지만 공격을 당한 진모씨는 ”내 옆을 지나 뛰어가던 전경 한명이 방패를 잡고 직각으로 내 얼굴을 겨냥했어요. 방패에 맞는 것은 다행히 팔로 막을 수 있었어요. 나는 쓰러졌고 그리고 다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서 도망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6.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차벽

2008. 6. 10.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종대로 한복판을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버린 것은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면이다. 경찰은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는 물론 비참가자들의 통행도 막았다. 그러나 차벽으로 막힌 상태에서 집회를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일반교통방해범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았다. 차벽은 이후 집회마다 늘 보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2. 7. 광범위한 통행방해

집회 부근에 집이 있는 시민들은 집으로 가는 것 까지 막혔다. 인근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여관에서 자라’고 한 사례,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시위대 해산 후에도 전경들이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한 경우, 교보문고 앞에서 참가자들이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거리를 진출하는 과정에서 교보문고 앞 인도를 봉쇄하는 등 다수 사례가 있다.

2. 8. 파란색 색소로 대표되는 무차별 검거, 체포 포상금

2008. 8. 15. 경찰은 파란색 색소가 포함된 물대포를 발사했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옷에 파란색 색소가 묻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48시간 구금되었다. 이날 연행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오후 3시부터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체포되던 장소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짐. 이에 더하여 체포한 경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파란색 색소가 묻은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증언”

경찰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이런 무차별 체포를 조장했다. 서울경찰청이 2008. 8. 6. 제시한 포상금 제도는 경찰관이 폭력 시위자 한명을 체포할 때 50,000원의 포상금을, 체포된 사람이 즉심이나 약식기소에 회부될 때 20,000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 서울경찰청의 계획은 “시위자들에게 대응하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경찰들의 “사기를 올리려는”것이었다고 한다.

2. 9. 기자들의 촬영 방해와 공격

경찰은 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타하거나 자의적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KBS 신승봉 기자는 “나는 어떤 경찰이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경찰 한명이 내 왼팔을 잡고 또 다른 경찰이 방패로 내 왼쪽 옆구리를 내리치고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폭력을 찍는 기자를 막고 렌즈에 손을 대고 카메라를 뒤집는 등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하어영 한겨레 신문기자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날 저녁 기자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나는 종로타워 근처에서 경찰 폭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나는 그 장면을 영상에 담으려 했지만 여러 경찰들이 내 어깨를 잡고 땅바닥에 밀치고 등을 발로 찼어요…나는 나를 때린 경찰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한 경찰이 나를 막고 내 카메라를 부셨어요. 그 경찰은 두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는 부숴버렸어요”

2. 10. 식별표시 미착용

2008. 촛불집회 당시 경찰 가해행위가 발생해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의 책임을 묻고자 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민사소송에서 가해의 당사자와 가해 당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된 사례, 진압경찰에게 구타당한 후 고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들도 다수 있다. 단순히 식별표시 미착용을 넘어 적극적으로 테이프로 소속 부대의 번호를 가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헬멧을 쓰고 방패를 앞에 놓고 있는 경우 얼굴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별표시 미착용은 가해자 처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방어막이 되었다.

3. 경찰 지휘부의 태도

3. 1. 경찰 지휘부의 적극적 면책 발언

경찰의 폭력은 단순히 현장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를 비롯해서 정권과 지휘부는 계속적으로 경찰 면책 발언을 함으로써 실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였다. 2008년 3월 법무부는 진압경찰이 시위 해산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고(2008. 3. 19. 법무부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 보장’ 방침), 7. 29.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원세훈 장관은 징계조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찰이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 9. 3.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한 경찰관에게 설사 도중에 용의자를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면책을 부여할 것이며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3. 2. 실제 대부분 면책됨

실제 경찰 폭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지휘부는 모두 면책되었다. ‘전경 군화발 폭행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지휘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교사방조 책임)에 대해 ”경찰 지휘부는 전경대원들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불법집회를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집회현장에서 욕설 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

요한 행동으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위대와 전, 의경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현장지휘관, 지휘요원 등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충돌을 적극 방지해야 함'등을 지시한 사실 인정. 달리 피의자가 폭행 지시 또는 묵인, 방조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이라고 하여 무혐의 각하처분을 하였다. 'YMCA 남자 행동단' 사건에서도 검찰은 밟고 지나가라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해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대지휘관으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교양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만약 지휘부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교양을 하였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경찰 폭력행위를 지휘하거나 묵인하였다면 더욱 가중 처벌의 사유로 삼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떤 폭력행위를 했더라도 사전에 '교양'을 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알리바이로 인정되었다.

3.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1)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 (2)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터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 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송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3)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단 조치로 인하여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음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4)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

(5) 소화기는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소화기를 뿌리는 진압작전을 펼칠 경우 연막효과가 발생하여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폭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6)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위험발생이 크기 때문에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8)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뿐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그러나 경찰은 소화기 관련 내용 외에는 권고사항을 불수용하였다.

4. 특징과 후과

2008년 촛불집회 경찰 폭력의 특징은 노골적, 원시적, 그리고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2008. 5. 2. 처음 촛불집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경찰이 여학생을 군화 발로 짓밟거나 도망가는 여성을 진압봉을 내려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막바지인 8. 15. 경에는 집회에 나가면 경찰 폭력을 당연히 예상하고 가는 상황이 되었다. 법무부등의 면책발언, 실제 이루어진 면책등으로 경찰의 폭력은 더욱 가혹해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경찰의 태도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된다'는 것이 경험된 것이다. 차벽은 흔히 보는 일상이 되었고, 지휘부는 면책을 넘어 승진하였다.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졌다. 모두 연장선상에 있다.

9여년이 지나는 동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2008년 촛불 집회에서 어떤 진압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지휘계통과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적 점검과 함께 가해 라인의 개인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참사에 대한 애도와 문제제기, 노란리본은 치안의 ‘점’ 이었다

배서영 | 4.16연대 사무처장

0. 발표문을 작성하며

집회 장소 인근에서 경찰의 무전에는 오가는 사람을 두고 몇 점이라고 한다. 열 명이 지나가면 10점, 백 명이 있으면 100점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무전에 쓰이는 약어이거나 암어인 듯 잘 못 알아 들었다. 그러나 자꾸 듣다보니 알법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치안 관리 대장에 기술 되어야 할 점에 불과했다. 광화문 남단에서 경복궁이 있는 곳을 갈 때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은 생활의 지혜가 아니다. 노란색 옷을 입으면 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 그 즉시 자신도 모른 채 치안 관리의 대상, 요시찰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제 시절 일본 순사가 항일독립운동을 한 이들을 요시찰 대상을 삼은 것 처럼. 근대에 형성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동등함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근대 민주주의 이전의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 자

첫 잘못하면 반국가 혹은 반정부 세력이 될 잠재적 위험을 담고 있는 무리로서 국민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 생명권은 치안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경찰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영화 마이 너리티 리포트처럼 경찰 권력이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을 범죄를 저지룰 수 있는 무리라고 그 미래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든 법, 절차적 근거들과 온갖 면피용 야비함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1.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경찰의 인권침해

1) 매우 자유롭고 편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세월호 가족 동향 수집

- 경찰 정보관들은 세월호 가족 동향을 자유롭게 수집한다. 가족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정보를 주고 치안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며 자유로운 사찰을 한다. 가족들은 그들에게 편하게 답해준다. 일선 정보관들에게도 이런 일은 곤욕스러운 것이다. 왜냐면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인간으로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나 경찰 상부는 하급 경찰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가족의 일거수일투족 뿐만아니라 그들의 구상과 계획, 내부자 관계망까지 수집해올 것을 요구할 것이다.

- 경찰의 협조자가 세월호 가족과 관계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여 그 회의자료와 회의 내용 정보를 입수하여 추모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법적 처

별의 증거로 삼으려는 예는 부지기수다.

- 사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1일 평균 22명의 사복경찰 배치. <미디어오늘> 2014. 5. 2.

안산 장례식장에도 해경 소속 사복 경찰 정보관이 8명씩 배치 의혹. <뉴스스> 2014. 5. 2.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2014. 4. 26. 방송) 관련 인터뷰 진행중인 피해자 가족의 말을 # 유가족 30여 명,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전북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서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2명 적발.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하다 '털미', <오마이뉴스> 2014. 5. 19.

최동해 경기청장 사과 but 유가족들이 “34일 동안 사복 경찰이 유가족 주위에서 정보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보고서 열람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대한민국 경찰이 생긴 이래 공개한 적이 없다. <서울경제> 2014. 5. 20.

당시 안산단원서 서장이었던 구모 총경 2014. 12. 근정포장(“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뉴스스> 2016. 10. 12.

특조위 청문회 - 경찰 내부 보고서 공개 경찰, 세월호 가족 ‘사찰’ 보고서 “강성시위 가담자 있다”, <미디어오늘>, 2016. 9. 2.

경찰청 문건 “경기지방청은 향후 경기·안산지역에서 장례·보상으로 인한 대정부 반발·유가족간 갈등이 초래될 것을 대비”한다며 “사망·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직·간접 접촉선 확보 및 강성단체·불순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활동을 강화” 등

가족 19명 신청 중 9명의 가족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6. 10. 기준)

- 정보 수집의 경찰 상부 지시가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모든 행위들은 잠재적 범죄예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경찰 상부 지시 즉, 정보 수집과 내사에 대한 시초 행위들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장치가 없으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찰 인권 침해 요소는 절대 개선할 수가 없을 것이다.

2)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집회 등을 범죄시하여 초래된 연쇄적 결과들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2014. 8. 15. 종각 집회에서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을 넘어 집회참여자들을 감시한 보신각 교통 CCTV 관련, 9. 5.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함.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해당 CCTV를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은 9. 17.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 경찰의 주장은 이 CCTV 영상녹화장치(DVR)의 하드 용량이 작고 노후되어(2001년식, 내구연한 5년) 10일간의 영상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음.

- 세월호 유가족인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는 2015. 4. 18.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를 임의 조작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14. 5. 6. 고발

- <JTBC> 보도에 따르면,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으며,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 실제 경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은 교통용 CCTV를 확대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의

일부를 집중 촬영.

- 2014년 만민공동회 집회 금지와 체포. 5/8(신고 14곳 중 13곳 금지), 5/18(신고 10곳 모두 금지), 6/10(신고 61곳 모두 금지) 체포 : 5/17(119명), 5/18(97명), 5/24(30명), 5/31(5명), 6/10(69명)

- 집회금지 탄원서 조작 의혹. 집회금지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주민 탄원서와 연명부는) 작성일자와 집회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현재 61곳 중 위와 동일한 이유로 집회금지를 당한 총 9명(행정소송 승소 1명 포함)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1심 계류중)

- 2015년 4/18집회 해산명령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 세월호 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한국정부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심의를 마친 후 2017. 5. 11. 한국정부에 대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중 유가족들에 대한 물대포 살수 및 최루액 사용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고를 우려한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수사, 기소하고 그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2018. 5. 12.까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절차의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

- 전략적 봉쇄소송 -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정부는 차량 및 장비 등 물적 피해와 경찰관들의 치료비등 인적피해 배상 명목으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연대, 민주노총 등 총 3개 단체와 박래군을 비롯한 5명의 활동가 등을 상대로 총 77,855,476원의 배상액을 청구. 경찰관 개인 40

명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청구

2. 최초의 지시가 투명해야 가능성은 열린다

1) 최초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시작되고 모든 저항권은 잠재적 범죄가 된다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인지,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 이것은 세월호 가족들이 늘 상 현장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누가 지시했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다. 현장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피하기만 한다. 오히려 경찰은 그런 질문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분노하여 거친 행위가 촉발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경찰 모욕과 공무방해로 체포하여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 분노유발자 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2) 최초의 지시 이전에 필요한 치안 국가 철학, 즉 국민에 대한 치안 태도 전환이 선언되어야 한다

- 여전히 전 근대적인 치안의 관점으로 국민을 불령선인으로 취급하는 경찰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인권침해 개선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된 인권에 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경찰의 전체적 선언과 현장이 성문화되어 선언되어야 한다.

3) 최초의 지시에 대한 적법성이 사후에라도 엄정하게 평가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 최초의 지시에 대한 모든 기록은 남아야 한다.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권 안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4) 최초의 지시 권한은 말단으로 더욱 내려가야 한다. 일선 경찰 공무원들에게 최초의 판단 권한을 주어야 권력을 분배했을 때 집단으로서 권력이 자신의 균형을 취해 나갈 수 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의 권한 분배가 없으면 일선 하급 경찰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 일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종종 경험해보는 일이 경찰 상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데 현장에 있는 경찰까지 그 지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권한이 분배 된 만큼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분배 되어야 한다. 경찰의 상부와 하부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내부에서도 책임 영역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질 수 있다.

3.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애초부터 제한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침해가 보장 된다

- 신고제로 되어 있는 이상 사찰의 대상을 피하기가 어렵다. 신고제는 사실 상 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 경찰이 동의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렇게 자신의 통제권 안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데도 이것이 불안하여 광범위한 사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력의 낭비가 아닐 수가 없다. 경찰 인권침해보장법이 바로 현행의 집회시위법인 것이다.

2) 집회 신고제를 폐지하고 제한 장소역시 극소화해야 한다.

- 신고제야 말로 일제시절과 군사독재시절의 잔재가 아닐 수 없다. 신고 없이 언제든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저항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경찰의 의무다. 집회를 지켜주는 경찰이 되어야 하는 데 집회를 관리하고 감시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로 되고 있는 것이다.

3)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수집, 사찰행위를 비롯한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 경찰이 가장 주목 하는 것이 바로 결사다. 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은 결사의 상태를 증거로 확보하여 결사를 붕괴시

킬 수 있는 요소에 접근하려고 한다. 가령,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추모 집회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결정했는지에 경찰 정보력은 집중된다. 추모 집회는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열리고 결사에 따른 자치 질서로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전체의 판단과 결정을 도모한다. 이에 경찰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4. 결론

- 304명이 희생됐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됐다. 이것이 왜 범죄시 되어야 하는 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의 인권침해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었다. 박근혜는 진상규명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다. 경찰은 결국 탄핵당한 박근혜를 비호한 것이다. 경찰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답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뿐이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다

최석환 |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1. 2015년 민중총궐기와 농민 백남기

2015년 11월 14일 서울도심은 전국에서 모인 13만명(경찰추산 6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의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고 농민들은 매해 이어지는 쌀값폭락과 밥쌀수입으로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었다. 파탄 지경에 이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노골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등 전 사회적으로도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상징될 만큼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갔던 시기였다. 수십만 명이 참가 하는 대규모 집회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강경 일변도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사회 각 분야에 서 '정상화'되어야 할 요구를 정리해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모색하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대회의 규모가 수십만이 될 거라는 분위기가 전해지자 이 대회를 막기 위한 작업을 서둘렀다. 대회 하루전인 11월 13일 정부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광화문을 발표하며 민중총궐기대회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농림부등은 산하 조직 및 노동, 농민단체에 '집회 참가 자제 및 참가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장관명의로 보내기도 하였다.

경찰은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여 전국의 248개 중대, 2만 명에 이르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였다. 이는 전국의 가용 가능한 경찰병력을 총 동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서울시내 일선서 서장들까지 전원 동원되기도 하였다. 집회를 막기 위해 사실상 서울시의 치안까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또 경찰 버스 679대를 동원하여 광화문 주변에 빈틈없이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 19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대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 살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과잉진압이 11월14일 단 하루에 이루어졌다.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잉되었던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은 살인적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두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탄압을 받았다. 이는 대회 이전부터 정부의 대응으로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포를 마구잡이로 쏘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고도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등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입단체 대표 50여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대회당일 구속된 6명등 민주노총에서만 19명의 조합원이 구속 되었고 그밖에 공식 확인된 수사 대상자만 1029명이었다. 이는 광우병 촛불에서의 수사 대상자 1649명 보다는 적은 수지만 광우병 촛불은 6개월간의 수사 대상이었고, 민중총궐기의 사례는 단 하루 집회에서 발생한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압수수색 및 소환, 구속등 사법처리는 해를 넘겨서 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졌다. 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은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경찰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대해 3억6천만 원의 손해소송까지 제기 하였다. 단 하루의 집회를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탄압한 것이다.

2. 인권침해의 유형

-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은 차벽과 물대포

민중총궐기대회에서의 가장 큰 인권침해는 단연 차벽과 물대포였다. 백남기 농민이 집회참가자들을 가로막은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것과 같이 차벽과 물대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경찰장비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은 전국에서 동원된 경찰버스로 태평로를 시작으로 세종로일대와 광화문과 경복궁 주변, 청와대, 종로일대와 인사동까지 빈틈없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참가자가 아닌 시민들의 통행도 제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에 가로 막히자 종로1가와 세종로사거리에서는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쏘아댔다. 이날 살수차가 사용한 물의 양만 하더라도 202톤에 달했는데 이는 2014년 기준으로 한해 사용량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경찰은 자체 물공급 차량의 물이 떨어져서 인근의 소화전의 물까지 끌어 쓰다 발각되기도 할 만큼 집회 참가자들에게 설새 없이 살수차를 발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의해 쓰러지게 되었다.

민중총궐기 대회 이전에도 차벽과 물대포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경찰내규로만 존재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규정을 법제화 하여 엄격하게 관리·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 경찰의 위해성 장비 사용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 백남기 농민의 국가손배 소송 재판에 제출된 당시 ‘청문감사보고서’를 보면(국회와 법원의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제출함) 살수요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도 없이 실전에 배치되었고(두 번째 실전배치) 물포 사용규정에 대한 숙지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포 장비 또한 압력조절장치와 CCTV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실전에 사용하는 등, 자신들이 만든 사용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으면서 그동안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주장해왔던 것이다.

-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극심한 경찰의 탄압이 이어졌다.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듯이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 ‘폭력’이라 단정 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연일 수많은 참가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통보, 구속이 이어지면서 과잉수사 논란도 발생했다. 경찰이 각급 경찰서에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면서 지역마다 성과경쟁을 하듯이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렸다. 지역의 노동조합, 농민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농민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활동가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방식으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환장을 남발하였다. 확실하지 않은 채증사진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참가자들의 신상·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빼내고, 참가자 주변인들에게 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묻는 등 경찰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경찰관이 민중총궐기 참가자의 인터뷰를 내보낸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참가자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친구를 사칭하여 참가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이나 경비실 학교에 채증사진을 들고 불시에 방문하여 개인 정보를 묻는 일도 있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회사가 조합원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노조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가려내겠다며 관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등에 노조 조합원 명단과 민중총궐기 당일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과연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 할 수밖에 없다.”(2016.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서 중)

이 같은 사례들은 단일 집회에 대해 너무나 많은 수사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짧

은 시간 내에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수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무리한 수사를 낳고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경찰력 집행의 문제점과 불처벌의 문제

집회시위에서의 경찰의 대응방식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문제다. 매년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면 의례히 정부는 ‘엄정대응’ ‘준법시위’등의 수사로 마치 집회시위가 ‘불온’한 것처럼 이미지화 한다. 경찰은 이런 ‘백’을 믿고 마음껏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인권의식’과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에 맞닿아 있다. 집회와 시위를 ‘관리’의 대상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불만세력’으로 치부하여 집회와 시위는 관리 혹은 진압이 대상이지 보장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공권력 집행에 대한 불처벌이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명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진압 담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내부징계를 받거나 그마저도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아무야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고 대부분 경찰의 수장(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청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다 보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법보다 물리력이 먼저인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억울하면 재판걸어라’는 식의 대응도 심심치 않게 경험한다. 심지어 변호사가 경찰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연행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이 경찰관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거

의 처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찰조직내의 ‘자기 식구 감싸기’와 불처벌의 역사는 경찰의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을 무디게 만들어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데,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집회 시위 현장에서 어느 누가 상관의 불합리한 지시에 반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나서서 하겠는가?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도 이런 불처벌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경찰은 ‘검찰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과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책임과 사과는커녕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구은수는 아무 일 없이 ‘명예롭게’ 퇴임하였고 퇴임 후 강신명은 국회의원의 도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경찰공제회의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들뿐만 아니라 민중총궐기 진압을 담당했던 경찰청과 서울청의 경비, 정보 관련 간부들은 모두 승진·영전했고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당한 경찰관들도 아무 일 없이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4. 진상규명의 과제와 필요성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느닷없는 사과를 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정정을 발표하고 바로 이어진 ‘기습’사과였다.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하나 없는 껍데기뿐인 사과였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았다고 보다 사과를 ‘당’한 수준이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지 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해 하나도 밝히지 않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는 말이 전부였다.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경찰의 입장은 한결 같았다. 지난해 9월에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앞에 두고서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 임기 중에도 이 사건에 대해 앵무새처럼 ‘검찰수사증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철성 현 청장은 사과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만 해도 강 전 청장과 똑같이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사과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니 그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전·현직 경찰청장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건을 대해온 경찰의 대응 방식 또한 문제였다. 사건 당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청문감사보고서’를 국회와 법원의 제출요구에도 끝끝내 버티다가 최근에서야 제출한 것도 그렇고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소송에서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미온적이고 사건 당일 경찰진압의 불가피성만을 역설할 뿐이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잘못된 게 없고 책임질 것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물포에 쓰러진지 317만에 결국 숨을 거두었을 때도 경찰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서울대병원을 수천의 경력을 배치했고 그 후 40여 일간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극한의 대립상황을 만들

었다. 이렇게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경찰이 사과를 한다니, 그 진정성을 단 1%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경찰의 형식적인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언급한 경찰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인정과 철저한 반성 없이는 백번 천번 사과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다시는 경찰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5년 농민대회에서 두 분의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돌아가셨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스스로 청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에 경찰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경찰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막는다면서 차벽과 물대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막겠다며 도입한 차벽과 물대포가 또다시 한 농민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다. 2005년에도 경찰은 청장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졌지만 사퇴 후 공기업 사장 등을 보장받았다. 또 누가 어떻게 강경진압 명령을 내렸는지, 현장지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지지 못했고 두 농민을 직접 가격한 기동대원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형사고발건은 종결되어버렸다. 이렇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질 않으니 경찰 공권력의 의한 희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 또한 별다른 감시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처벌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집회시위의 '성공적' 진압이 승진과 앞길을 보장 받는 사다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②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김정욱 |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 2009년 공권력의 기억은 두려움의 존재로 각인되며 폭력 진압속에 함께살자! 생존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묵살되고 그 자리에 수많은 구속자와 부상자, 손배가압류, 동료, 가족들의 죽음을 남기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파업이 종결된 지 8년!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물도 음식물도 차단되고, 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제3의 국민으로 차별받았다. 국가권력은 도장공장을 봉쇄하고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은 물론 테이저건과 고무탄총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대테러무기까지 동원하여 진압을 하였다. 또한 2012년 4월5일부터 해고자 이윤희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죽음을 방관할 수 없어 서울 대한문에 농성을 시작하여 근 1년 넘는 시간을 고문과도 같은 비인도적인 모욕, 폭행 인권침해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인 생명권까지 위협당하는 등 인권과 법이 무시되는 상황이었다.

쌍용자동차 77일 공장 검거투쟁시 경찰 인권 침해 사례 (2009년 5월22일-8월5일 기간)

1. 공장안에서 벌어지는 사측과 용역의 인권침해 방관

- 노동자들의 방어적 대항, 폭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측과 용역이 저지르는 폭력에 대한 감시, 폭력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이를 제지하고 조절해야 함에도 방관하였다.

- 구사대, 용역들의 볼트 난사, 쇠파이트 소지

증거사진 23 27일 새벽, 소화기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용역경비와 그 앞에 쇠파이트와 각목 등으로 무장한 제 땅을 두드리거나 휘두르며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증거사진 24. 25 구사대와 용역이 공장안으로 진입하면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출처 - 민중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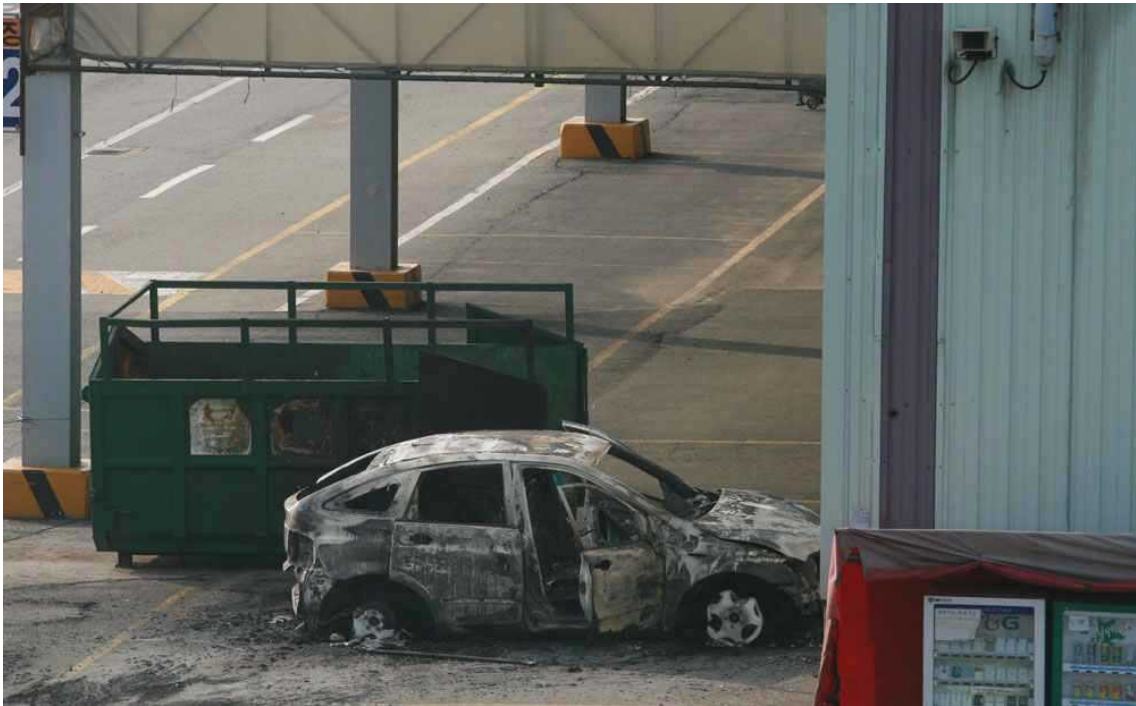
- 의사, 의약품, 음식 반입 차단

증거사진 29, 30 부상당한 노동자를 실고가는 구급차를 구사대가 가로막으며 이송을 막고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출처 - 칼라TV)



- 용역경비에 의한 화재시도/ 소방범위반(소화전 단수) 7월 16일부터 사측이 의료진 출입을 금지하고, 20일부터는 물과 가스를 끊었으며 이후에는 전기마저

끊었음. 단수 뿐 아니라 소화전까지 차단되었던 상태로 경기도 소방서가 사측에게 빠른 조치를 촉구.(소방기본법 5장 28조는“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측과 용역 경찰의 합동작전: 2009년 6월 공장진입작전과 같이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와 경찰이 합동작전으로 진입하였고 대치상황에서도 곳곳에서 합동으로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용역경비의 규정 외 불법장비 사용을 목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장구를 용역경비가 착용,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증거와 함께 법적으로 고발조치 했다.



2. 살인적인 경찰폭력과 과잉대응, 임무방기로 인한 인권침해.

- 7월 22일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사용한 최루액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강한 산이 포함된 액체를 헬기를 통해 비닐봉지에 넣어 투하 혹은 직접 살포함. 최루액의 주성분이 '디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로 분석되었음. 주로 페인트 제거나 플라스틱 용매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발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

질로 분류되어 있음. 노동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 및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에 노출된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수포가 생기고 살갓이 벗겨지는 급성피부염 현상이 발생, 위험한 물질임이 분명함.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집단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해당함.



경찰제복을 입지않은 사람들이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최루액을 제조하고 있다.



제조현장에 있는 차량에서는 최루액 제조물품과 제조된 최루액이 봉투에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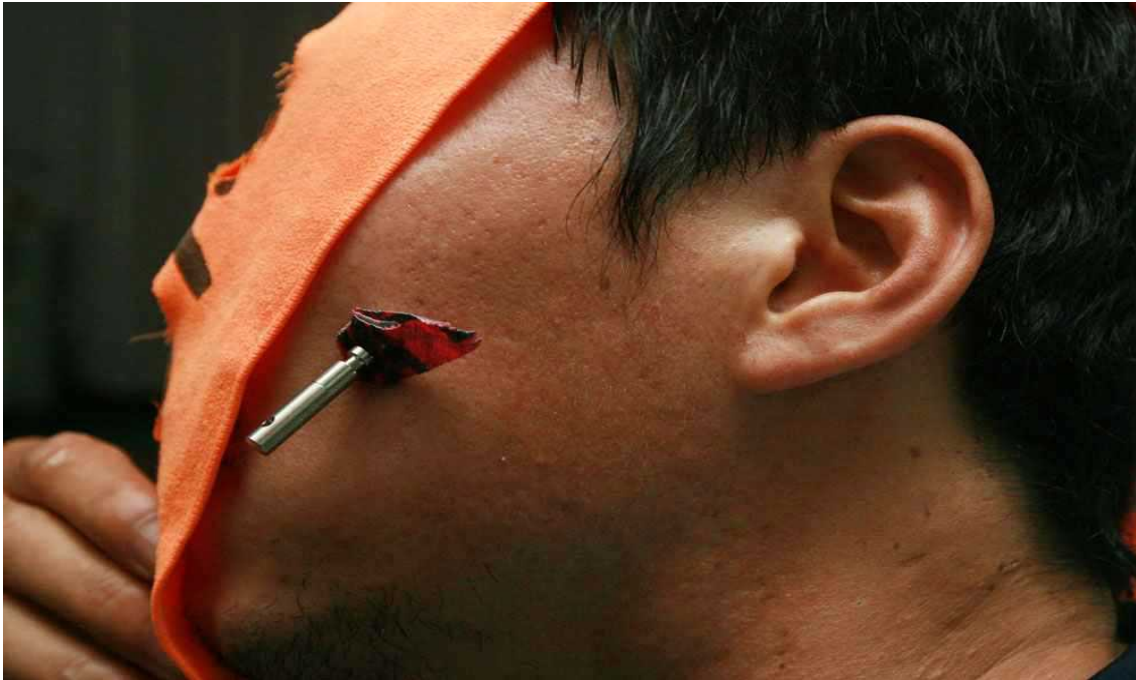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액이 플라스틱병과 스티로폼을 변형시켰다.

- 대테러진압용 테이저건 사용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 (출처: 노동과 세계)



경찰의 테이저건에 의해 얼굴에 부상당한 조합원(2명이 더 부상당함.)

- 기자회견마저도 방해하고 참가자를 연행하는 공권력남용



기자회견 중인 인권활동가를 연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중인 의사를 사지를 들어 연행하고 있다.

- 농성중인 노동자, 행진 연행 과잉행사

노동자들은 무장해체 된 상태에서 집단적 구타 등 불필요한 경찰폭력이 있었음, 주요도로가 아니였음에도 토끼몰이식 진압과 연행.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미고지 연행과 여경없이 여성을 연행하는 사건도 곳곳에서 발생함.



무장해체 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구타하는 경찰 <출처: 미디어 총청>



여성을 여경없이 연행하고 있으며 팔을 꺾고 진압봉으로 누른 채 연행하고 있다.



인도에 있는 집회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 새벽 가대위와 언론에 대한 사측폭력 방조

새벽 2시 40분경 사측 관리자 20~30명이 우르르 달려 나와 일부는 현장 상황 중계를 차단, 일부는 천막 철거하고 도망침. 가대위들이 차에 가서 잠깐 빵을 먹는 사이 가대위 천막을 침탈해가대위와 기자들을 폭행, 천막을 철거함. 폭력을 행사한 관리자를 붙잡은 상황에서도 경찰의 방조는 계속됨.



3. 사측과 경찰의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 단수와 식량반입 차단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지나 심한 고통을 호소.
- 최소한의 의료지원조차 차단당하는 상태에서 관리를 요하는 지병이나 부상시 어떤 조치도 불가능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항시적인 폭력에 노출, 파업노동자들은 합동작전 중인 용역경비, 관리자를 비롯한 구사대, 경찰을 상대로 수면을 취할 새 없는 밤샘대치를 계속했음. 이로 인해 최루액, 새총, 방화, 무장경찰과의 충돌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었음.

- 사측의 각종 차단을 방조하고 공조하는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인권유린
-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에 집결하여 있는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기위한 특공대 투입용 컨테이너 박스와 특공대가 배치된 상황으로 대형참사가 예고되었음.

4. 피해현황 (8월 11일 현재 1차 취합)

사망자 7명- 연행자 625명- 구속자 64명- 부상자 290명- 재물손괴 11건

※ 8월 12일 쌍용차 52명 추가소환, 2명 체포영장 추가

사망자현황(사망자 5명의 아기유산 2명) 7명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현장 인권침해

대한문 앞은 사실상 경찰에 의한 '계엄' 상황이다. 2013년 4월 4일 증구청이 대한문 앞 농성을 강제철거하면서 줄곧 경찰은 대한문 앞을 점거해왔다. 경찰은 대한문 앞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집회도, 노숙도, 침묵시위도, 연좌농성도, 그 어떤 것도 금지시킨다. 심지어 경찰은 인권과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욕하고 괴롭혔다. 3류 조폭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치사한, 도를 넘은 경찰폭력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연대하러 온 모든 이들은 또 한 번 공권력에 의해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훼손당했다.

2012년 4월 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여파로 죽어간 쌍

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분향소를 지금 대한문 앞 화단이 조성된 자리에 만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만들어놓은 대한문 농성장은 저항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이 시대 삶의 공간으로부터 밀려난 밀양주민들, 강정주민들까지 합세해“함께 살자 농성촌”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3일 대한문앞 농성장 화재 이후 서울 중구청은 계고장을 보내 농성촌을 철거하겠다고 협박했고 4월 4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서울 중구청은 사라진 농성장자리에 화단을 설치했고 그때부터 경찰은 대한문앞 농성장에 본격 상주하면서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해가림막 하나없이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한낮 피약빛을 견디면서 임시분향소를 힘껏 지켜나갔다. 때로는 화단안에 들어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단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낚아채어 내동댕이쳤다. 특히, 5월 29일 집회의‘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장소 불법난입 △불법해산명령 남발 △불법체포와 감금, 구타 △불법채증 △최루액 난사 등을 통해‘저항과 연대의 공간 대한문’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6월 10일 서울 중구청은 또다시 계고장 하나 없이 대한문 쌍용차 임시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이날 경찰은 항의기자회견조차 막았고 경찰 행동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앞세워 저항의 의지를 꺾으려했다. 그러나 다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임시분향소를 만들었고 6월 24일부터 화단 앞에서 각계 사람들이 매일 항의연좌농성을 했다.

대한문 농성장에서 일어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비단 집회시위의 자유만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함께 저항을 만들고 연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했다. 이에 쌍차범대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대한문앞 농성장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

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첫째, 이 보고서는 대한문 앞에서 일어난 비가시화된 경찰폭력을 드러내고자 한다. 경찰은 집회금지, 집회공간 난입이나 최루액 난사 등 이미 가시화된 폭력 외에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집단 괴롭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계속 했다. 경찰은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틈타 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노동자를 깨워 잠을 잘 수 없도록 한다든지, 대한문 앞을 경찰병력으로 포위하여 마치 유치장에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감시한다든지 등 이런 괴롭힘을 매일 반복했다. 경찰의 집단 괴롭힘, 모욕감과 수치심 주기, 감시 일상화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동이다. 둘째, 경찰이 들이대는 ‘법’ 집행이 얼마나 초법, 불법적인 행위인지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집시법, 경직법 등을 앞세워 저항과 연대를 막고 거리에서 다양한 표현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초법과 불법 위에 선 이들이 바로 경찰임을 이 보고서는 생생히 보여준다. 공권력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든 이들의 인권이 옹호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으며 적법절차를 지키고 인권감수성으로 훈련되어, 인권보장의 책무를 분명히 할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이 보여준 지난 동안의 족적은 과연 경찰이 공권력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수시로 깨우고 깔고 자던 깔개나 박스 신문지 등을 뺏거나 찢어 없애며 잠을 못자게 하고 비오는 날씨에도 깔판이나 비닐로 비를 피할수 없게 하는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반복했다. 괴롭힘 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어 사용을 연대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고 있었다.

- 사례: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수시로 깨우기



6월17일 새벽2시경 대한문앞에서 경찰이 10분조차도 잠을 못자게 함.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한문 처마에 장시간 감금(6.18, 6.24)



6월 18일 앉아있는 노동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불법집회라며 강제해산조치를 명한다는 방송 후 사지를 들어 대한문 안쪽으로 가두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모욕, 괴롭힘, 모욕적인 언어사용 "나가서 조져 버려!" 조폭 영화의 대사가 아니다. 이날 오후 6시경 대한문 임시 화단 앞에서 침묵 농성 중이던 청년의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경찰이 청년에게 내뱉은 말이다. 청년은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미 다른 경찰 속으로 사라진 경찰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오마이뉴스 2013.06.25.)

"우리가 10시 넘으면 봐주고 있지 않느냐 분위기 파악 좀 하고 퍼포먼스 그만 하라" (오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의 발언)

- 문제점

국제인권기준은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공격을 가하는 범죄행위로서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사를 위한 고문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도 마찬가지다.

대한문에서 경찰은 대한문 농성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형식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듯 하며 정당한 공권력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폭력적 대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경찰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수시로 깨우고, 비가 와서 사용하는 깔판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인도에 앉아 책을 보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들먹이며 이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모욕하고, 검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위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된 폭력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행위는 ‘괴롭힘’을 통해 대한문에서 농성하는 사람들, 연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침해

경찰은 대한문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금지했으며 집회장소 난입이나 근거없는 해산방송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다. 이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 집회신고없이도 보장된 의사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집회목적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조건을 차벽이나 경찰도열로 봉쇄하거나 집회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내어 차단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 사례: 집회금지, 집회방해, 기자회견 방해

쌍용차범대위와 참여연대 집회금지, 꽃보다 집회

이어말하기 : 집회신고에도 명시되어있던 천막과 의자 등을 구청의 점유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구조물이라면서 집회장소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여 참가자들이 폭우속에서 비를 맞으며 행사를 진행했다.



6.10 민주항쟁 26주년인 10일 오전 중구청의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쌍용차 범대위의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고 있다.

출처) 이승빈 기자(민중의 소리)

1인시위 방해: 1인시위자 뒤에 바짝 붙어서 밀어내기, 시위자 앞을 가리기

연좌 방해: 연좌 앞에 경찰이 도열하여 행인들이 볼 수 없게 가로 막음.



6월 24일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추모와 폭력규탄을 내용으로 하는 피켓을 들고 연좌하자, 보이지 않게 그 앞에 도열해 있다



6월 24일 연좌하고 있는 이들의 사지를 들어 이동시키는 경찰, 이동 후엔 한 쪽 길을 막아 연좌장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둘러싸 감금하기를 반복한다

- 문제점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이 두 가지 자유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라고 설명한다. 이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며,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의견의 교환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의사표현이며,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대하며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 그 밖의 다양한 표현방식의 의사표현의 권리는 경찰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법적 집회가 아닌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문 앞은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경찰에 의한 자의적인 법 적용과 물리력으로 표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억압했다. 특히 5월 29일 이후 쌍용차범대위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마치 대한문 앞은 집회가 금지된 장소인 듯한 경찰력을 행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만일 집회에서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은 그 행위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집회가 명백하게 폭력적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으로 전면금지해서는 안 된다.

3. 불법체포, 폭행, 고착 및 강제철거

- 사례: 폭력을 사용한 진압, 해산



6월 2일 경찰은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고착하는 해산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우 집어던지듯 손발을 놓곤해서 계속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폭행, 고착, 자의적 연행

6.10강제철거 / 분향소설치방해와 물품탈취 및 훼손

자의적 연행

6월 24일 오전 계속해서 강제해산 하려는 최영성 경비과장에게 싸이코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 후 두 시간만에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 노동자들 같은 이유로 다시 연행하자 단체로 항의하며 같은 단어를 외치며 다 잡아라 가라 하니 연행자를 풀어주었다.

- 문제점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진압과 해산, 자의적인 체포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문 앞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실제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해산시키려 하니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저항을 억압적으로 막기 위해 경찰력을 행사하다보니 그 행위가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도 연행과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의 진압과 통제는 사실상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력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행동, 저항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찰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탈취하고 있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구급차에 실려가거나 온 몸에 상처가 사라질 날이 없다. 이런 행위는 더 이상 공권력이라 할 수 없으며 사적 처벌과 다르지 않다. 경찰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 특히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제되고 신중한 공권력을 기대할 수 없다.

4. 이동의 자유 침해

- 사례: 시각장애인 점자유도 블록 훼손

- 문제점

화단을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위에 설치하고 문제제기가 있자 급히 새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했다. 그러나 기존의 유도블럭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 유도블럭을 설치하여 오히려 보행에 혼란을 주었으며, 이마저도 경찰이 늘 상주하면서 유도블럭을 밟고 있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집회와 의사표현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이동의 권리를 침해받아, 안전하지도 않은 통행의 경로가 되었다.

5. 종교의 자유 침해

- 사례: 6.14 단식기도 방해

최한국목사 6.13일 단식기도 시작, 기도회를 가장한 집회라며 사방을 둘러싸고 방해하고 위협, 갈아입을 옷을 빼앗으며 나와서 갈아입으라며 빈정거림, 비가 오니 파라솔이라도 놓게 해달라는 요청에 단식기도를 그만두라고.

- 미사 방해 및 폭행

매일 진행되는 대한문 미사에 필요한 물품(천막 의자등)을 경찰이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미사를 허용한다고 방송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사 준비를 하려 갈개를 준비하던 신부가 채증중단을 요구하자 경찰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7

월 1일 미사직후 폭력연행을 제지하는 신부를 밀치고 영대를 탈취해가기도 했다. 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사제단에게 최성영 경비과장은 분향소 설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



경찰이 1인 시위용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신부의 영대까지 빼앗아 달아나자 사제단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 문제점

대한문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들을 연대하기 위해 종교인들의 종교행사가 열렸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지향하는 사상과 양심에 따라 종교행위를 한 것이다. 종교행위가 어떤 폭력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경찰은 온갖 트집을 잡아 방해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려 한다. 양심과 사상에 따른 평화로운 표현행위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검열되거나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6. 집회감시용 대한문 CCTV 설치, 운용

- 사례: 4월 5일, 서울 중구청, 대한문 앞에 불법으로 CCTV 설치. 4월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공고하고 설치해야 함에도 절차 지키지 않음.

4월 26일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 서울 중구청에 CCTV설치 반대 의견서 전달했으나, 5월 2일, 서울 중구청, CCTV 설치.

- 문제점

서울 중구청은 4월 5일 대한문앞에 불법으로 CCTV 설치했다. 설치 이전에 행정예고 기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이 항의하자 CCTV를 슬그머니 내리더니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지나자 4월 26일 CCTV설치 재검토 의사를 밝힌후 5월 2일 결국 CCTV를 설치했다.

CCTV의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부합하도록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3월 3일 대한문앞 분향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CCTV를 통하여 용의자를 검거하기까지 했음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황상 이 CCTV는 대한문앞 분향소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설치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7. 신변보호나 112 신고 무시



6월 24일 10시경 쌍용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사지를 들어 대한문 처마 인쪽에 1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감금 사실을 알리며 구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12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112는 오지 않았다. 항의를 계속 하자 나타났으나 경찰과 이야기 나눈 후 철수.

- 문제점

대한문 앞은 경찰에 의한 상시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폭력과 괴롭힘으로 격리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경찰의 폭력과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은 법으로 보호받는 길 밖에 없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찰뿐이다. 경찰은 자신의 직무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로 규정한다. 이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신고를 한 것임에도 수수방관하거나, 같은 경찰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신고를 무시한다면 경찰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동조한 것과 같다.

8. 경찰 명찰등 신분확인복장 미착용, 신원확인 요청 무시

- 문제점

2011년 6월 3일 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처벌근거를 위해 모든 법집행관들이 집회와 시위과정에서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복장을 착용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 동원된 경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지 않았으며, 대한문에 상주한 경찰 역시도 신원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경찰의 폭력을 반복하게 만든다.

결론

농성장들은 마치 치위저야 하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저항하고 연대해야 할 거리는 온통 경찰에 의해 점거되었다.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도로는 차벽으로 인해 교통의 방해하고 있다. 또한 광장과 인도에는 경찰병력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일까? 지난 서울 한복판 저항과 연대의 상징인 대한문 분향소는 저항과 연대의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를 빼앗으려는 경찰, 중구청과 싸움 계속 되었다. 저항과 연대를 만들고 함께 삶의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싸움은 이어질 것이다. 단연코 말하건대, 대한문은 경찰과 서울중구청의 것이 아니다. 대한문은 이 시대 삶의 공간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저항과 연대의 공간이며 추모의 공간이다. 공

권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파괴적인 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은 인권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해야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대한문에서의 공권력은 이미 폭력이 되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했다. 우리는 공권력이 공권력으로서 행사되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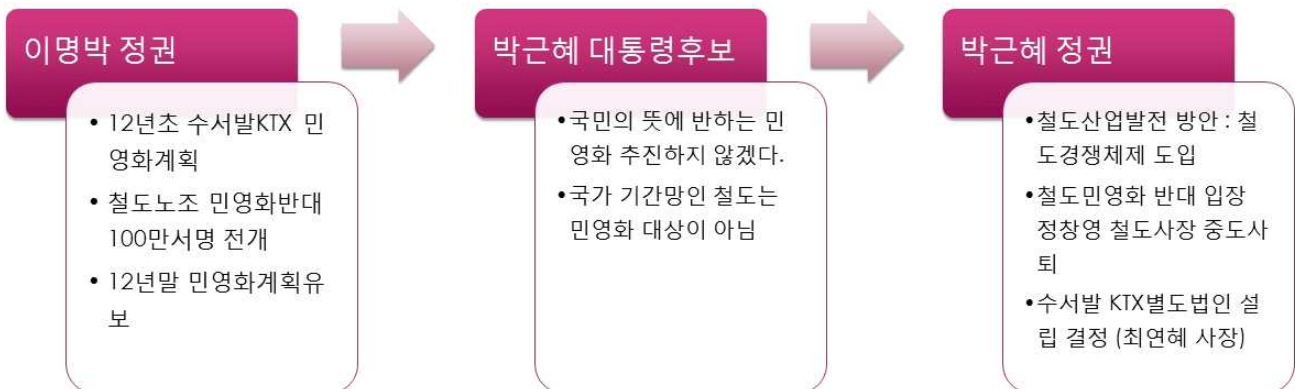
2013년 철도파업으로 본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최은철 | 철도노조 전 사무처장

2013년 철도파업으로 본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1.수서발 KTX 민영화 경과



2. 철도파업 개요



25대 집행부 출범

- 수서발ktx 민영화 반대 천명
- 민영화 반대 범대위 구성 시민사회 100만 서명 전개



교섭및 쟁의 절차

- 최연혜 사장 임종돌변
- 중노위 조정절차 완료
- 필수유지제도 준수



13년 12.9 파업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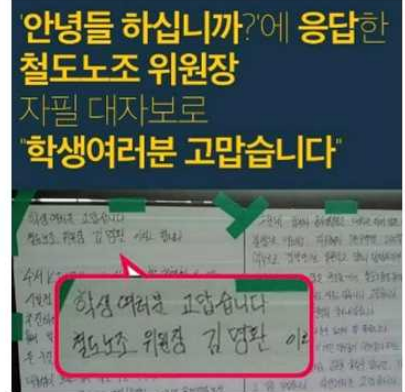
- 8,600명 직위해제
- 190여명 업무방해 고소고발

3. '안녕들 하십니까' 사회적 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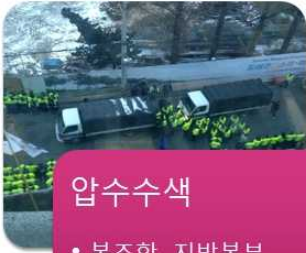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지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4. 공권력에 의한 탄압



압수수색

- 본조합, 지방본부
- 압수품 : 머리띠, 버튼, 플랭카드, 피켓, 스티커



체포영장발부

- 하루걸러 출석 3차통보
- 기관차 지부장만 골라 영장발부



민주노총 침탈

- 12.22 새벽
- 5,500 병력, 600명 체포조

5. 파업파괴에 앞장서는 경찰

- ▶ 12월 16일경 체포영장 청구를 시작하여 총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 ▶ 특이점은 체포영장의 표적이 된 노조간부들을 보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방본부장 등 주요 간부외에 고속기관차, 기관차 등 기관사가 속한 지부의 지부장, 파업참여자가 많은 지부의 지부장 등이 표적이 됨.

6. 민주노총 침탈



137명 연행, 60여명 재판-
100~200만원 벌금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구속, 전
통합진보당 의원 3명 재판중



시설 파손 (1억2천여만원)

7. 지도부 검거에 혈안이 된 경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총력... 1계급 특진 내걸어

23일 오후 3시부터 일제 검문검색 실시

13.12.23 16:28 | 최종 업데이트 13.12.23 16:28 | 연합뉴스(yonhap) ▼

좋아요 37개

+ 크게 - 작게 인쇄 URL줄이기 스크랩



37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4

댓글달기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거전담반 외에도 각 경찰서 운용 가능 인력을 총동원, 추적에 나서고 있다.

10.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승진하는 경찰

'민중총궐기에 진압 경찰 책임자들 승진 파티'
 서울 2019년 12월 16일 14:25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

총경(경찰서장급)

11. 수배, 체포의 근거가 된 '업무방해' 무죄



경향신문

사회

전체 | 최신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입시 노동 보건·복지 미디어

대법 “철도파업, 사측 예측 가능…업무방해 무죄”

곽희양·이유진 기자 huiyang@kyunghyang.com

12. 철도파업의 공권력 투입에 따른 피해

'파업'잘못된 인식 조장

범죄

폭력

사회적 갈등

노사관계파탄

징계,해고,손해배상

당사자(가족) 고통

경제적 고통

수배,체포,구속



13.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

진상조사

- 파업파괴 공권력 행사
- 노조탄압을 위한 사용자와의 유착 비리
- 개인정보 불법취득과 인권 침해 사례

책임자 처벌

- 업무방해 수사 책임자
- 민주노총 침탈 책임자
- 민형사상, 인사상 처벌

노동3권보장

- 합법적 노동권행사 공권력 개입 중단
- 쟁의권 행사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제 노동기준 준수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③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찰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의 문제

박석진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운영위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1. 글을 시작하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경찰이 하고 싶은게 많은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걸었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도 경찰청이 담당토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고 대통령 경호업무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까지 경찰청이 흡수한다면 조직 확대는 물론이고 그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이 그 같은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그 뿌리인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군사정권시절 경찰은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민주화 투쟁에서 독재정권과 맞선 시민들이 맞닥뜨린 구체적인 싸움의 대상은 경찰

이었다. 87년 박종철열사를 고문해 죽인 것도 경찰이며 이한열열사에게 최루탄을 쏘아 살해한 것도 경찰이다. 1991년 봄에는 강경대라는 대학생을 백주에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하기도 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그들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5년,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폐쇄하고 경찰청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며 경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2009년, 용산참사를 일으켰으며 같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테이저건을 쏘며 달려들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경찰은 군사정권시절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물대포(살수차)가 전면으로 등장했고 최루액을 시민들에게 난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5년에는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조준발사해 숨지게 만들었다. 그랬던 경찰이 이제 다시 인권을 말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경찰의 구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농민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전임 강신명 경찰총장의 태도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전국의 지방경찰청들도 뒤질세라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여기저기서 인권 관련 강좌와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있다. 그럼 이제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이제 정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것인가. 경찰이 스스로 인권을 중시한다는 데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난 시간 그들이 저질렀던 적폐에 대해선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 그 폭력과 반인권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반성 및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언젠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이 저질렀던 폭력과 반인권의 역사 중에서 2007년부터 2016년 초까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이 강행되며 발생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어지는 사례 외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며 그 내용 속에서 진정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과정

2007년 6월, 국방부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 된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의 전형과도 같다.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강정마을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진압의 이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결정하기 두 달 전인 2007년 4월, 당시 강정마을 회장은 전체 1900여명의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채 단 87명만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고도 되지않은 임시총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즉각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방부의 결정이 있는지 두달 뒤인 2007년 8월, 다시 개최된 임시총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린 마을회장을 해임하는 한편 제주해군기지 찬반투표를 통해 참석자 94%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다.(당시 마을 유권자 1050명 중 과반 이상인 725명 참석, 680명 반대) 그러나 이같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으며 제주해

군기지사업은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 항만 건설에 필수적인 입지타당성 조사는 생략되었고, 해당 지역의 여론조사는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구림비 해안(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설정되어있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가능토록 하는 변경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당시 다수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었다. 2011년에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5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재검토 요구 역시 무시되었다. 2012년 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는 정부측의 압력에 굴복해 조작된 결론을 내렸다. 이 조작된 결론에 근거해 당시 이명박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사 강행을 천명하면서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경고하고 그 해 3월, 구림비 해안을 파괴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본격화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 방식은 폭력적일 수 밖에 없으며 경찰은 그 폭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타의 여러 비민주적인 국책사업의 CASE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역시 경찰은 인권의 억압자였으며 국가폭력의 담당자였다. 이하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보여진 경찰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을 유형별로 주요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반인권성

1) 과도한 경찰력의 동원, 항상적인 통제와 공포분위기 조성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2012년 하반기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훈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 된 2011년 8월 1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약 1년여의 기간동안 제주도 이외 육지에서 파견된 진압경찰의 인원은 128,4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단순화하면 그 기간동안 강정마을 주민 1명당 60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셈이다. 당시 강정마을 곳곳에는 수십여대의 경찰차와 수백여명의 경찰이 상주했으며 공사를 강행시키기 위해 주로 밀집해있던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외에 강정마을 안을 떼지어 돌아다니기도 하고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는 주민이나 활동가 중 수배상태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은 강정마을 전체에 위압감은 물론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당시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진행한 강정마을 주민 99명과 자원활동가 2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는 우울증을 겪는 주민의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강박증(33.7%), 불안증세(33.7%), 정신증(29.6%), 신체화 증상(28.6%), 공포·불안(25.5%), 적대감(24.5%)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강정마을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는 저항자들과의 충돌이 이루어지던 현장 뿐 아니라 강정마을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지난 2015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진선미의원(민주당)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던 2012년 당시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전개하던 측이 신고한 집회 중 여러 경우에 서귀포경찰서는 불허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번	집회신고 내용	금지통고 일자 및 사유
1	<p>〈명분 없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불법 감금 규탄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17~3.16 09:00~24:00 • 구름비 해안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16 • 보안통고 불이행(제8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사업단 장소 사용허가서 미비 ※ 참가예정 단체, 준비물, 위임장 미첨부
2	<p>〈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 및 백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5 11:00~4.2 24:00, • 강정마을 일대(축구장, 기지사업단 및 공사장 정문, 코사마트사거리, 강정포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3 • 공공의 안녕 질서 위협(제5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 단체가 공사현장 주변에 연좌 등 불법집회, 차량으로 통행로 점거 등 업무 방해
3	<p>〈구름비 폭파에 사용되는 화약판매 규탄 선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10 11:00~4. 6 10:00, • 안덕면 동광리 178번지 일대, 동광육거리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9 • 공공의 안녕 질서 위협(제5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 단체가 공사현장 주변에 연좌 등 불법집회, 차량으로 통행로 점거 등 업무 방해
4	<p>〈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15 17:00~5.12 15:00, • 강정천 체육공원, 주차장, 기지사업단, 정문, 공사장정문,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13 • 공공의 안녕 질서 위협(제5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 단체가 공사현장 주변에 연좌 등 불법집회, 차량으로 통행로 점거 등 업무 방해

		⇒ 4.24 제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6.22 訴 취하
5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 '12.5.15~6.13, • 강정포구, 중덕삼거리 입구, 공사장 정문과 사업단 사이, 풍림콘도 앞 도로변, 강정 정수장 정문 입구 도로변, 강정천 체육공원	• '12.5.13 • 보완통고 불이행(제8조 제1항 제2호) ※ 강정천 체육공원 사용승인서 미첨부

표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서 상징적 존재였던 구럼비 바위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지던 2012년 3월을 전후로 해 대부분의 집회신고가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이에 관련한 반대투쟁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었고 실제 강정마을에는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여러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과 개인들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련의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통보를 내린 것이다. 그 사유와 관련해서도 여러 경우에 경찰은 집시법 5조 1항을 들고 있는데 집시법 5조 1항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집회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정마을에서 전개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청이 제출한 표에 적시된 불허사유도 연좌나 차량을 이용한 도로점거 등이며 불법집회라는 추상적인 이유뿐이다. 이같은 경찰의 태도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가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²⁾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상

2)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3) 폭력적 방식의 진압 : 끌어내기, 고착, 채증, 연행 ...

강정마을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과 반인권성의 본론은 매일같이 이어지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을 진압하던 경찰의 방식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강정마을의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선택한 저항의 주된 방식은 ‘연좌’였다. 이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시공업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행정적 문제제기가 묵살되는 상황에서 그곳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폭력적인 저항의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기지사업단 입구나 공사장 정문에 연좌해 있던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공사 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시로 경찰은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해 ‘끌어내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적인 폭행이 자행되었다. 보통 연좌한 한 사람에게 적게는 3~4명 많게는 5~6명이 달려들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팔을 꺾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공공연히 구타를 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명의 경찰이 한 명을 끌고 나오는 상황에서 그들의 폭행이 가려지거나 감춰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폭행의 가해자인 경찰에게 항의하려 해도 집단적으로 짓눌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의 당사자를 찾기는 어려웠다. 설사 찾아낸다 해도 수백여명의 경찰집단

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좌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2000, 헌바67, 83(병합) 결정문 중에서]

속에 있는 가해자를 지목해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러명의 경찰들에게 사지가 들리고 팔이 꺾인채 끌려나오는 남성



팔이 뒤로 꺾인채 거꾸로 들려나오는 여성

경찰의 폭력행사는 연좌한 사람들을 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공사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경찰은 끌어낸 사람들을 길가의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찰이 스스로 ‘고착’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폭력이 이어졌다. 그곳을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최루액을 쏘대기도 했다. ‘고착’은 일종의 감금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공사저지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2012년 6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의 경비구역들이 강정마을회에서 준비한 합법적인 문화제를 방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경찰은 아무런 설명없이 2시간이 넘도록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고착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집단적으로 폭행당하는 남성

보다 적극적인 저항에는 더 잔인한 진압 방식이 동원되었다. 2012년 3월 19일, 공사현장으로 이송되는 화약을 막기 위해 평화활동가들은 PVC파이프로 팔과 팔을 연결한 채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선택한 방법은 팔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망치로 깨는 것이었다. 비록 항의자들 스스

로 연결한 것이라 해도 서로가 연결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항의자들의 팔과 손에는 큰 상처가 생겼고 그 고통보다 더 큰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얼마 뒤인 4월 16일, 다른 항의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앞을 막았을 때, 이번엔 경찰은 망치도 모자라 전기톱을 들고 항의자들의 팔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절단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팔을 향해 잘려들어오는 전기톱의 소음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실신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팔이 연결된 PVC파이프를 망치로 깨는 경찰과 공포에 질린 여성



경찰의 망치질로 깨진 PVC파이프와 그 과정에서 다치고 피가나는 여성의 손과 팔



팔이 연결된 PVC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자르는 경찰과 울부짖는 여성

종교행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정에서는 천주교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강정의 평화를 위한 미사가 매일 열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마저도 불법집회라며 탄압했다. 2012년 8월에는 영성체를 나누기 위해 미사 참석자들에게 가는 문정현신부님을 경찰이 방해하는 과정에서 영성체가 땅에 떨어져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의 방해로 인해 땅에 떨어진 영성체를 추스르며 오열하는 문정현신부님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의 사람들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 요소는 '채증'이었다. 공사 저지행동이 진행되는 상황도 아닌데 시도때도 없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들의 행태에 사람들은 항의하게 되고 이에 경찰이 채증을 멈추지 않고 고압적으로 나올때 보다 큰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경찰은 채증이 예방적 정보 수집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으며 강정의 경우 주로는 집회시위참가자의 사후 법적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사복을 입은채 채증을 하는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

강정마을에서 폭력행사의 주체는 경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시공사가 고용한 경비용역은 강정에서 자행된 폭력과 인권유린의 또 다른 주체였다. 그들은 항상 욕설과 무례한 태도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그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묵인하고 조

장했다. 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시공업체의 대리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찰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를 끌어내는 제주해군기지 경비용역들

강정에서 경찰에 의한 연행은 무차별적이었으며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고 역시 폭력을 동반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되며 구럼비 바위 폭파가 있던 즈음인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으며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거나 남자경찰이 여성을 연행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갔다가 연행된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당시에는 기껏해야 경범죄로 범칙금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 경우에도 무차별적인 연행을 일삼았다.



연행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집단적으로
짓밟히는 남성

4. 글을 마치며

-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경찰의 폭력과 반인권성 문제를 극복해야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폭력행사 및 반인권적인 진압방식은 국가권력이나 국가정책의 저항자들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보장될 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집회나 시위 참가자의 수배에 달하는 경찰력이 동원되고 그들에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통제되거나 감시되지 않은 권한이 주어질 때, 경찰은 그 권한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강정의 경우, 일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10~20명 내외의 인원이 연좌하여 저항행동이 이루어졌는데 통상 300~4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앞서 언급한 끌어내기와 고착, 연행 등 진압작전을 수행했다. 15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숫적 우위, 즉 힘의 우위는 그들에게 보다 폭력적인 진압방식을 선택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현장에는 경찰의 폭력행사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그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강정의 경우, 경찰 수뇌부는 제주지역 특유의 공동체문화에서 자유로운 '외지인 경찰', 즉 육지경찰이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원했는데 이들은 제주지역 경찰들보다 더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 구럼비 바위를 폭

파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던 2012년 3월 7일 직전에 서귀포 경찰서장이 바뀌었는데 그는 부임하며 당시 이명박정권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육지출신의 경찰이었다.

용산 참사나,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등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경찰책임자들이 그 ‘공’을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영전한 것과 같이 강정의 경우도 폭력적인 진압의 책임자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그 댓가를 받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을 가능하게 했던 이동민 서귀포 경찰서장은 이후 전북본청 정보화장비 담당관으로 영전했으며 이후 익산과 부안 등지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선 경찰들을 지휘했던 서귀포 경찰서 경비과장 구슬환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2012년 10월, 경찰의 날에 경호경비업무를 완벽하게 관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이라는 포상을 받았다. 결국, 방식에 상관없이(그것이 폭력적이던, 반인권적이던) 정치권력의 반대자나 일방적 국책사업의 저항자에 대한 진압이 성공하고 정치권력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담당했던 경찰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정치권력의 요구를 실현시켰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예견되며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지금의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보다 효과적인 폭력과 진압의 방식을 찾으려는 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 결과 인권경찰과는 거리가 먼 국가권력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한 폭력집단, 오랜시간 우리가 겪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온존하게 될 것이다.

밀양 주민을 괴롭히는 한전의 사설경비 업체로 전락한 공권력 - 밀양송전탑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 침해와 폭력

이계삼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1. 개요

1.1. 사건의 경과

2000년, 정부의 장기수급전력계획에서 처음 언급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 수송을 위해 울산시,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에 걸쳐 162기의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밀양에는 5개면(단장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청도면)에 걸쳐 69기의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던 초기부터 주민들은 사전협의과정에서부터 주

민들은 배제되었다. 200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그해 12월 5일, 처음으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자체 집회를 시작하면서 반대 운동이 불붙게 되었고, 2007년 정부의 사업 승인이 났다.

2012년 1월 16일,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산외면 보라마을 고(故) 이치우 어르신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면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 세상에 알려졌다. 탈핵희망버스가 다녀가고,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깨달음이 번져가면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직 공사’라는 한전의 일념은 변함이 없었다. 결국 2013년 5월 공사에는 매일 500명, 10월 공사부터는 매일 3000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1.2 투입된 경찰력의 규모

2014년 6월 27일 경남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밀양지역에는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기 하루 전인 2013년 10월 1일부터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때인 6월 11일까지 254일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38만100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었다.

의경의 숙박비(1인당 1만2000원)와 식비(세 끼 1만8000원) 등 총비용은 9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500명의 경찰관이 4000만 원씩을 사용한 셈이다.

1.3 피해의 현황

1.3.1 형사적 피해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15년 10월까지 밀양 송전탑 관련 공사방해 등으로 총 383명을 검거하여 그 중 3명을 구속, 341명을 불구속 송치, 39명을 내사종결 하였음이 밝혀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45명, 연대시민 22명 등 도합 67명이 기소되었고, 이중 56명 확정, 11명 재판 중이다. 확정된 56명중 집행유예 7명, 벌금 43명으로 납부된 벌금액은 총 9,740명에 달하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면 1억7천여만원이 법률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남은 11명이 최종 확정시 벌금 등 법률비용은 2억여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주민 45명 / 연대 활동가 22명 / 총 67명

□ 주민 연령대별 분포 : 40대 4명 / 50대 11명 / 60대 14명 / 70대 11명 / 80대 3명

□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 20대 4명 / 30대 4명 / 40대 12명 / 50대 2명

□ 집행유예형 14명

박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고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양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윤00(상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00(상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00(특수공무집행방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00(특수공무집행방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정00(특수공무집행방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00(업무방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송00(특수공무집행방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최00(특수공무집행방해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벌금형: 39명 □ 선고유예: 7명 □ 무죄: 1명 □ 1심 계류 중: 3명

1.3.2 민사적 피해

민사소송의 경우, 한전이 2017년 2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위 김경수 의원실에 제출한 밀양송전선로 갈등 관련 주민 고소 고발 사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시공사 공사가 1차 공사가 시작된 2009년 7월2일부터 13차 공사가 시작되어 종결된 2014년까지 총 66건의 고소 고발로 연인원 381명의 주민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었다.

□ 한전(26건)

접수일자	구분	대 상	내 용	결 과
'09.08.12	고소	상동면 7인	직원 폭행(개인)	벌금형4, 기소유예3
'09.10.08	고소	백00	직원 폭행(개인)	징역1.6년, 집유2년
'11.04.05	고소	안00	직원 폭행(개인)	벌금형

'11.10.24	고소	우00	업무방해(개인)	고소취하
'11.11.02	고소	강00	업무방해(개인)	고소취하
'11.11.08	고소	김00	직원 폭행(개인)	고소취하
'11.12.23	고소	우00등 2인	허위사실 유포	고소취하
'12.06.15	진정	이00등 2인	업무방해, 임목절도	절도무혐의처리
'12.06.19	진정	이00	업무방해	불기소
'12.07.04	고소	이00	업무방해, 임목절도	절도무혐의처리
'12.07.24	고소	이00등 4인	폭행, 업무방해	고소취하
'12.06.22	민사	이00등 7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고소취하
'12.06.27	민사	이00등 3인	손해배상(10억)	고소취하
'12.06.27	민사	이00, 서00	부동산가압류신청	가압류결정, 고소취하
'12.07.03	민사	이00등 7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고소취하
'13.10.11	고소	한00	업무방해(109호)	고소취하
'13.10.25	고소	구00	업무방해(3공구 헬기장)	증거불충분 불기소
'13.10.25	고소	정00	업무방해(도곡저수지)	구약식처분(벌금)
'13.10.25	고소	신원미상 3	업무방해(도곡저수지)	경찰 종결
'13.10.29	고소	김00등 1인	상 해(도곡저수지)	구약식처분(벌금)
'13.11.01	고소	신원미상 2인	업무방해(도곡저수지)	경찰종결
'14.01.07	고소	최00	얼굴폭행(113호)	구약식처분(벌금)
'14.02.19	민사	김00등 16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고소취하
'14.02.28	고소	박00등 6인	업무방해(114호)	증거불충분불기소
'14.06.27	고소	천00등 1인	업무방해(107호) 및 폭행	구약식처분(벌금)
'15.01.14	고소	김00등 1인	115호 철탑 돌투척	경찰종결

□ 시공사(40건)

접수일자	구분	대 상	내 용	현재상황
'10.08.16	고소	밀양시0	직무유기	고소취하
'11.07.12	고소	백00등 48인	업무 방해(한성)	고소취하

'11.07.18	고소	방00등 6인	업무 방해(삼성)	고소취하
'11.07.20	고소	정00	재물 손괴(삼성)	고소취하
'11.07.29	고소	윤00	폭행 치상(삼성)	고소취하
'11.07.29	민사	윤00등 4인	손해배상(한백)	고소취하
'11.07.16	민사	박00등 7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고소취하
'11.07.18	민사	오00등 13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고소취하
'11.11.07	고소	김00등 2인	공사방해/선동(대동)	고소취하
'11.11.08	고소	이00등 21인	공사방해/선동(한백)	고소취하
'11.11.09	고소	이00등 10인	공사방해/선동(한백)	고소취하
'11.11.25	고소	배00등 2인	폭행/허위, 명예훼손(대동)	고소취하
'11.11.25	고소	신원미상 1인	허위유포, 명예훼손(천도)	고소취하
'11.11.28	고소	류00등 2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1.12.06	고소	박00등 2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1.12.12	고소	윤00등 2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1.12.20	고소	윤00등 2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1.12.24	고소	한00등 10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1.12.27	고소	윤00등 10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1.12.27	고소	윤00등 3인	절도죄(한백)	고소취하
'12.01.16	고소	윤00등 13인	공사방해(한백)	고소취하
'12.07.09	고소	이00	감리원 폭행	고소취하
'12.08.01	고소	문00등 7인	시공사직원 폭행	고소취하
'12.08.02	고소	문00등 7인	공사방해, 업무방해	고소취하
'12.08.03	고소	문00등 4인	업무방해(폭행, 손괴)	고소취하
'12.08.05	고소	김00, 양00	폭행(96호 현장)	기소유예
'12.08.19	고소	김00	시공사직원 폭행	고소취하
'12.08.28	고소	문00등 5인	무단침입, 업무방해	고소취하
'12.09.07	고소	김00	장비손괴(96호)	고소취하

'13.01.28	민사	양00등 5인	96호 불법시설물 출입금지및퇴거단행	고소취하
'13.10.01	고소	김00등 4인	업무방해(89호)	고소취하
'13.11.19	고소	박00등 13인	무단침입(123호) 플래카드 훼손(122호)	고소취하
'13.12.17	고소	괴곡마을 4인	작업자 상해(괴곡마을)	증거불충분, 불기소
'14.02.12	고소	백00등 9인	업무방해(도방달기장)	고소취하
'14.04.24	고소	윤00	업무방해(130호)	고소취하
'14.04.25	고소	윤00	업무방해(117, 121호)	고소취하
'14.07. 1	고소	서00	업무방해(114호)	고소취하
'14.07.15	고소	김00	업무방해(115호)	경찰종결
'14.07.17	고소	한00등 2인	업무방해(129호)	고소취하
'14.07.17	고소	안00등 1인	업무방해(107호)	증거불충분, 불기소

2. 인권침해의 유형³⁾

2.1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경찰관의 권한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또한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3) 인권 침해의 유형은 2015년 12월 5일 발간된 <밀양송전탑반대투쟁백서 2005~2015> 제 3장 '인권 침해'에 수록된 '공권력' 장의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다.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송전탑건설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주민과 연대하는 시민들 위에 군림하였다.

2013년 5월 20일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은 시설물 보호를 명분으로 주민의 공사 현장 접근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주민의 안전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 및 국제 기준⁴⁾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2013년 10월 30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남경찰청장이 공권력 투입이 과도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하고 그동안 자행된 인권유린, 과잉진압의 과오를 일부 시인하거나 시정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에도 잔인한 진압이 이루어져 주민 여러 명이 다쳤고, 그 이후로도 공권력의 폭력은 계속되어 2014년 6월 행정대집행을 명분으로 한 진압작전에 이르게 되었다.

2.1.1 과잉대응과 마구잡이 체포 그리고 편파, 표적수사

-
- 4)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33(1990)
4. 직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관들은 물리력과 화기 사용에 의존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의도한 결과를 이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거나 다른 수단들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물리력과 화기를 사용해도 좋다.
 5. 합법적인 물리력과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언제나, 법집행관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위법행위의 정도와 합법적 목표에 준하여 물리력과 화기 사용을 자제한다.
 - (b)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사례1)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체포와 편파 수사

2012년 9월 7일에 96번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동양건설 소속 인부들이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대책위원장 김00씨(40세, 농민)를 20여분간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쓰는 원통에 노끈으로 묶어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시공사 직원들은 김00씨가 굴착기 엔진에 설탕을 타고, 공사장 경계측량을 위한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엔진에 설탕을 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시공사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억류 행위를 한 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김00씨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파출소로 연행하여 갔다. 당시 김00씨는 마을 반대대책위 위원장이자 그 마을에서 1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사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음에도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처리하려 하였다. 체포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⁵⁾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권력이 과잉되게 집행된 것이다.

또한 당시 출동 경찰은 억류 과정에서 폭행 의혹이 있던 시공사 직원들은 현행범이 아니라고 본 반면, 김00씨만 현행범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김00씨를 연행하고 나서 소식을 전해들은 4개면 주민들이 단장면파출소로 몰려와 항의를 하고

5)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판결요지】

-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나자 며칠 뒤 시공사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경찰이 갈등 현장에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한전 시공사 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편파적인 수사로 판단될 수 있다.

그 날 굴착기에 설탕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한전 직원들이 현장체포 하겠다며 경찰들이 오기 직전까지 구금하였다. 도착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다. 묶이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고, 한전 직원들이 항의하는 손00의 가슴팍, 뒤통수를 쳤다고 한다. 그 이후 경찰들이 몇 차례 현장으로 찾아 왔었다. 감금당했던 당시 사진이 있다. 묶은 사람 중 미동ENC(제갈00 등) 사람들을 고소했으나 혐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들이“수갑 차고 갈래, 그냥 갈래?” 라고 말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하00 변호사가 도착했고, 경찰 버스, 119 등 수십 명이 주민들과 대치 상태였다. 설탕 넣은 사실이 없다. 시동을 걸면 고장난다고 걸어보지도 않았다. 그 날 아침 산에 올라갔더니 큰 굴착기 문이 열려 있어 엔진실 문을 들여다보고 주민들 천막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전 직원들이 오더니 욕을 했다. “개새끼, 새끼, 너는 이제 죽었다, 설탕 넣은 거 다 증거가 있다”, 한 명은 주민들의 쓰레기 더미 근처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날 숨겨 놓았던 만년필 녹음기를 찾아간 거였다. 밑에서 올라온 5명이 합류해서 총 7~8명이 와서 현행범이라고 묶어놓겠다고 했다. 반항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손을 뒤로 돌려 손만 묶어 놓았다가 도망간다고 손과 발을 다 묶었다. 동네 주민이 올라와서 사진을 찍었다. 20~30분 후 이제 경찰이 온다고 자기네들끼리 풀어주라고 하더니 풀어주었다. 경찰은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 위원장만 보낼 수 없다고 크게 항의를 하니 나를 묶은 사람들도 전부 다 데리고 갔다. - 주민 김00 증언



2012년 9월 7일 시공사 직원들에 의해 억류된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00 위원장(출처: 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례2) 부상을 유발하는 과잉 대응

2013년 5월 22일, 88번 철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은 한전 직원이 제공한 일반 커터칼로 주민의 몸과 굴착기를 연결한 노끈을 끊었다. 격렬히 저항하던 주민은 부상의 위협을 받았다. 당시 주민과 굴착기를 묶은 줄은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는 매듭 상태였고, 줄을 묶은 주민은 3명인데 반해 경찰은 60명이 있었다.

2013년 5월 22일 오전 10시경 챙겨온 사탕을 경찰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웃으며 농담 중에, 하청업체 현장 반장이 오더니 오늘은 일을 안 한다고 하였다. 자리에 앉아 있으니 굴착기에 물을 붓는다고 하길래 일을 시작할 것 같아 굴착기 밑으로 들어갔다. 굴착기에 연결된 끈과 자신의 다리를 묶었다. 한전과 경찰이 우리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전 여직원이 경찰에게 커터칼을 건네주자 사람이 발버둥 치고 있는 데도 그 커터칼로 사람 몸에 묶인 끈을 끊었다(주민 구00 목격). 끌려 나오던 중에 굴착기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손00),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

신(박00)하여 헬기로 구조되었다. 경찰에게 커터칼로 끊은 사람을 신원 확인해 달라고 하자 경찰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사이 한전 여직원은 도망갔다. - 주민 손00, 박00 증언

2013년 5월 20일 평밭마을에 전경 200명 용역 40명 한전직원 40명이 132번 송전탑 아래에 헬기장을 설치하였다. 전경 20명이 할머니 3명을 이동제한하며 고립시켰다. 할머니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경과 용역직원과 몸싸움을 계속해서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더욱 어깨가 좋지 않다. - 주민 장00 증언



2013년 5월 공사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에 손 부상을 입은 부북면 이재란 할머니(출처: 나눔문화)

사례3) 표적수사와 만취한 경찰에 의한 체포

2013년 10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 고00씨가 연행되었다. 경찰 교대시간을 즈음해서, 경찰이 오가는 길에 앉아있던 고00씨에게 밀양서 지능범죄팀장 임00 경위가 비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 상황은 10여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이후, 고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며 강제적으로 연행해 차에 태웠다. 임경위는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비를 걸었다. 연행 이유 고지와 미란다원칙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 당시 임경위에게 상당한 술 냄새가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이 공무집행 중에 술을 먹으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임경위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경찰차로 태운 뒤, 고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영장 제시 혹은 임의동행 등 아무런 고지도 없이 그대로 태우고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임경위는 밀양경찰서에서 내렸다. 임경위의 음주 경위에 대해 의혹을 가진 장하나 의원실에서 임경위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임00 경위는 어제 마신 맥주3캔이 무엇이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내며, 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전날(10.10)부터 경찰이 고00씨와 구00씨를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있어, 주민 활동가에 대한 표적수사와 연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술에 만취한 경찰이 거의 시비조로 하드라고요. 눈동자가 너무 야비하게 바라보더라고. 그러면서 “어, 고쌤 부부가 다 지시하네, 맞네?” 이런 반말 비슷한 걸 한다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릴하냐고 항의해도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이렇게도 무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덮어씌울 수 있구나. 거의 표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근접했을 때 술냄새를 아주 역하게 맡았죠. 지나치다, 거의 만취다, 거기 문제제기를 하고 장하나 의원실에서 음주 측정을 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연행에 대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절차냐고 엄청 항의하니까, 자기들이 대화라고 하고 연행한다는 소리 절대 안 했거든요. 대화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차에 문을 열고 들어갔죠. 문을 열어놓고 하든지 밖에 나와서 하라고. 그럴 때마다 문을 쿵쿵 닫더라고요. 대화 한다는 경찰이 또 나를 끌어내고요.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제 삼으니까 분명히 (차에서) 내리라고 했거든요. 70대 노인을 허리를 꺾고 못 걷게 하고 (차에) 집어넣고,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내려라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양반(고00님)이 사과 안 받고는 내릴 수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경찰서로) 데려가는 건 또 뭐니까? 그것도 밀양경찰서

에 술취한 경찰은 내려놓고 나서 먼 창원서부경찰서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수사를 하고, 정당한 절차 하나도 없이. 그거는 막 비법법이라 예. 두루 얹쳐가지고 연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겁을 주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례4) 표적수사와 표적연행

2013년 10월 19일 오전10시 바드리마을입구에서 주민 송00씨가 차량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이동을 요구하는 바람에 충돌이 빚어졌고 이 상황에서 10여명의 주민이 저항했는데 그동안 반대 대책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던 송00씨만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도로 밖 대추밭 안에 설치된 농성장(비닐천막)에서 도로쪽으로 난 농성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주민들이 너무 가깝게 막지 말라고 항의하던 중, 차 한 대가 주민들 가까이로 왔다. 당시 경찰 무전기에서 차량번호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주민 앞으로 와서 멈추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기획체포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연행이었다.

사례5) 과잉대응과 폭력 1

경찰이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적이며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늘어가면서, 특히 2014년 1월 6일에는 여러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충돌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경찰 숙영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이 컨테이너를 들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고답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사유지 공터에 컨테이너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경찰은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2명이 실

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이날 오후 3시50분경, 고답마을 주민 최00씨는 아들 윤00씨가 경찰에게 무릎과 다리 등으로 목, 어깨, 가슴 등을 결박당하고,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는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는 밀양경찰서 및 김해 증부서 사복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라’고 외치면서 경찰들의 팔을 잡았다. 이 때 경찰 한 명이 최00씨를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할머니 손등에 생겼다.

경찰은 손등에 난 상처가 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상처의 형태를 봤을 때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이 85세의 연로한 노인을 상대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최00씨의 손등에 난 상처

사례6) 과잉대응과 폭력 2

2013년 10월 30일 경남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인권유린, 과잉진압을 시정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때,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밀양시 상동면 도곡저수지 입구 대치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있었다. 길을 줄지어 팔짱을 끼고 막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경찰들은 돌진해서 가운데를 뚫고 양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졌고 도미노처럼 연달아 주민과 시민들이 넘어졌으나, 경찰은 압박을 풀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다. 그 와중에 주민과 시민들이 쓰러져 경찰들의 발에 찍히고 밟히는 상황에서 비좁은 공간 사이로 한전직원을 태운 경찰버스가 지나갔다. 한전직원이 다 지나갔는데도 경찰의 압박은 한동안 풀리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아래에 쓰러져있던 시민은 당시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울산의 연대 시민 김00씨는 경찰이 머리를 신발로 찍어 부상으로 출혈이 있었으며, 순천의 연대 시민 심00씨는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울산시민 이00(여)씨는 손가락이 경찰에 의해 손가락이 제쳐지는 부상을, 마을주민 김00씨는 허리와 목에 부상을 당했다.

사례7) 편파수사

2013년 11월 25일 동화전마을 대책위와 주민 2명이 경찰관 3명을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밀양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소한 형식을 문제 삼으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주민들이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관은 다시 ‘6하 원칙에 따라 조리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며 주민의 말을 끊어 중단시키고 짜증을 내며 시비조로 말을 걸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사관 교체신청을 했다.

2.1.2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작전’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과정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몇십명의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천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장 철거를 밀어붙였다. 주민들의 신체 위로 절단기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등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경찰은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였고, 공포감과 더불어 여성 농성자에게는 수치심마저 느끼게 하는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유엔의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공익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공권력 사용은 반드시 적법한 법집행 목적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은 가능한 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6월 11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했다.

2.1.2.1 좁은 공간에 있는 소수의 농성자를 진압하고자 투입된 과도하고 폭력적인 경찰병력

언론에 따르면 2014년 6월 11일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력은 20개 중대 2000여명이다. 각 농성장 별로 시차를 두고 행정대집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병력이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성자 수에 비추어 '압도적'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행정대집행 대상이었던 송전탑 공사 예정지 101번, 115번, 127번,

129번 4개의 각 농성장 별로 지키고 있던 주민과 종교인, 연대자는 평균 50~100여명에 불과하였다.



129번 농성움막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서는 경찰병력, 끝이 보이지 않는다.



101번 농성장을 몇 겹으로 에워싼 경찰병력, 뒤쪽으로 안전모를 쓴 한전 직원들이 대기 중이다.

사례8) 127번 농성장

127번 움막의 경우 오전 8시 50분경 움막 정면에서 밀양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은 지 1~2분도 채 되지 않아 마치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하듯이 움막 뒤편으로 경찰력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움막 뒤편을 포함해 4면 모두 철조망을 타고 들어와 절단기와 가위를 들고 움막해체작업을 시작했다. 농성장 움막에 경찰이 진입한 후, 경찰과 기자, 연대자가 뒤엉킨 비좁고 위험한 상황에서 육중한 절단기가 농성자들의 손과 다리 위, 머리 위, 그리고 절단 작업을 하는 경찰들 사이로 전달되고 오갔다.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도 경찰 지휘관은 소리를 지르

며 “고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등 오로지 농성자들의 진압에만 몰두했다.

127번 움막 안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쇠사슬 절단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경찰이 밀쳐내면서 천막 코너에 있던 고령의 주민과 수녀 위로 기자들 무리가 한 꺼번에 넘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수녀는 허리에 찬 쇠사슬에 채여 고꾸라지기도 했다.

사례9) 115번 농성장

115번 움막에서 경찰은 농성장 철거를 시작하면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한 경찰기동대원은 주민을 끌어내 고착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해당 기동대원에게 사실 확인과 성명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자리를 피했다. 경향신문 기자의 사진을 통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동대원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2.1.2.2 농성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대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경찰은 물리력 행사에만 몰두했다. 4곳 농성움막 대부분 산에 위치하여 주변 경사가 가파르다는 점,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여성이며, 오랫동안 농성을 해오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된 진압 작전으로 크고 작은 부상이 속출하고 실신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사례10) 농성자 다수가 여성이었음에도 남성경찰이 주도하여 진압

129번 움막 옆 일부 주민들이 농성 중이던 구덩이로 진입하는 시도는 남성경찰에 의해 시작되었다. 구덩이 안에 있는 주민들 중 일부가 옷을 벗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초기에 여성경찰을 투입하지 않고, 남성경찰들이 주도하여 알몸 상태의 여성주민을 제압하였다. 경찰은 살에 닿을 듯 아슬아슬하게 절단기로 쇠사슬을 잘라낸 뒤 주민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에 대해 연대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야 여성경찰을 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남성경찰과 여성경찰이 혼재되어 있었다.

경찰은 농성 움막 바깥으로 주민, 수녀, 신부, 연대자 등을 끌어낸 뒤 곳곳에서 고립시켰다. 여경들이 와서 여성 지킴이들과 수녀들을 끌어낸 후에는 남성경찰을 동원하여 둘러쌌다. 남성경찰들은 수녀와 여성 지킴이들을 둘러싼 뒤, 바짝 조여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소속, 지휘, 근거 등을 물어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성경찰들이 둘러싸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들이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조금의 저항이라도 하면 남성경찰이 투입되어 여성을 들어내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사지가 들려나오는 상황에서 옷이 올라가고 흐트러지면서 속살이 드러났다. 수녀들의 경우, 강압적으로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정결을 상징하는 베일이 강제로 벗겨졌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항의를 무시로 일관하면서, 이를 남성경찰들은 그대로 지켜볼 뿐이었다.

127번 움막 안 쇠사슬 절단 작업에 몰두한 경찰은 여성 농성자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다. 어떤 남성경찰들은 여성 농성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러가면서 무리하게 쇠사슬을 절단했다.

115번 움막 안에서 쇠사슬을 두르고 있던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들이었음에도 절단기 등으로 쇠사슬을 끊고 이들을 진압한 것은 남자경찰들과 남자공무원들이었다.

101번 움막 안에 경찰 투입되었을 때,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압은 남성경찰 뿐이었으며 여성 농성자를 붙잡고선 쇠사슬을 끊고 보란 듯이 커터칼로 움막을 찢었다.





129번 농성장에서 몸이 뒹어진 상태의 수녀들, 그 옆으로 구덩이 안에 있는 알몸의 주민들에게 남성경찰들은 절단기를 들이대며 제압하였다.

사례11)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철거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진압

129번 움막 한편은 심한 경사로여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

였지만, 대거 병력을 투입하면서 경찰은 거침없이 연대자들을 밀치고 들어왔다. 경사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다수의 수녀들이 몸이 뉘어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그 위를 거침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서로의 팔을 붙들고 있던 상태의 수녀들을 강제로 뜯어내면서 팔이 심하게 멍들거나 다쳤으며, ‘외방선교회’ 소속 수녀 4명은 응급후송되었다.

움막 옆 구덩이에는 한00씨 등 6명의 주민들이 알몸 상태로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있던 좁고 낮은 구덩이 위로 덮인 얇은 천 위로 경찰들이 올라선 뒤 거침없이 커터칼로 찢었다. 경찰의 무게로 곳곳이 움푹 내려앉아 주민이 깔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주변에서 “저 안에 할매들이 있다”며 항의해도 경찰은 천을 찢고 구덩이 안 주민들을 들어내기 위한 작업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115번 움막에서 경찰은 주민과 연대자를 강제로 끌고 나갔고, 일부는 사지를 들어 강압적으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찰과상이 빈번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도 발생됐다. 연대자 중 강00씨는 허리부상을 입었고, ‘사랑의 시튼 수녀회’ 소속 김00 수녀는 팔이 골절되어 모두 응급후송 되었다.

101번 움막은 차량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산 정상에 위치해있다. 오후 4시경 진입한 경찰은 연대자들이 움막 파이프에 몸을 묶고 연좌해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강제로 뜯어내고, 펜치와 절단기를 들어 움막을 해체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몸통이 조여지고 당겨지면서 대다수가 고통을 호소했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가운데 4명은 헬기로 응급후송 되었다.



115번 움막에서 경찰이 수녀들과 연대자들을 제압하고 주민들의 몸에 묶은 쇠사슬을 끊고 있다.



101번 움막에서 한 주민의 머리를 짓누른 상태에서 강제로 쇠사슬을 절단하려는 경찰

2.1.2.3 과도하고 부적절한 채증

밀양에서 경찰의 채증은 일상화되고 조롱과 함께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특별한 행위가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밥을 먹거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일상적인 통행 시에도 카메라는 주민들을 향해 있었고, 개인 스마트폰, 채증 중임을 알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채증에다 심지어는 위급상황의 구호요청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경찰이 밀양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현장에서 채증을 남발하면서도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근거요구나 항의는 묵살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경찰은 채증의 법적 근거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채증활동 규칙에 의하면 “채증”이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는 “영장 없는 채증에 대해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4년 4월에는 채증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경찰청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채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법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양에서는 이러한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채증이 광범위로 이루어졌다. 2013년 10월,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에 요구해 받은 ‘밀양송전탑 공사 채증요

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매일 69명에 달하는 채증요원을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증 문제죠. 우리 집은 길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 위치가요... 그래서 경찰버스가 절반 이상 2/3 정도를 막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가 밥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그 버스안에서 채증을 합니다. - 주민 구00 증언

사례12) 사복경찰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증

2013년 10월 3일 사복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주민들과 시위대를 채증했다. 별도로 채증 담당 경찰이 있고, 이미 마구잡이 채증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장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했다. 감시단의 문제제기로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반복했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고 항의하니 “나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사복을 입은 채 채증 중인 경찰

사례13) 종교행사를 위한 참석에도 계속되는 채증

2013년 10월 7일 금곡헬기장에서 헬기 소음 문제로 인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사가 지연되어 묵주기도를 하면서 미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사복 입은 경찰들을 포함해 4~5명이 계속 채증을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미사를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채증은 계속되었다.

사례14) 기자회견에 대한 채증

10월 17일 바드리마을 사자평명물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

니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발언자들에 대한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성미산 마을 학생들이 발언과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졌다. 노래하는 장면을 왜 찍냐는 질문에 경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이다.



인권침해감시단이 항의하면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사례15) 몰래카메라 형태의 채증 카메라

몰카 형태의 채증 카메라까지 등장하였다. 이 장비는 특수 영상기록 탐조등으로 불리는데, 캠코더를 내장한 고휘도 LED 플래쉬이다. 일반적인 카메라와 다른 모양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경찰은 대낮에 영상 녹화가 가능한 탐조등을 들고 몰래 조작하며 주민들을 채증하였다.

2013년 10월 29일 낮, 바드리 입구 현장에서 경찰이 어깨에 맨 랜턴에서 계속 빛이 나면서 사람을 향해 높이 조절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었다. 랜턴은 아니었다. 주민을 감금하고 통행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자, 경찰관이 어깨에 끈으로 매고 허리 위치 정도에 오는 랜턴 모양의 물건을 계속 손으로 올렸다. 그 물건에서 하얀 빛이 나와서 계속 시민들 얼굴 쪽을 비추고 손바닥으로 물건을 올려 적당한 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보였다.

사례16) 응급환자 발생에서 응급조치는 외면한 채 진행되는 채증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127번 움막 바깥으로 끌려나와 고착된 상태로 주민 1인이 정신을 잃고 손발에 경련을 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이 손발을 주무르고 부채질 하면서 경찰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성을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할머니를 향해 채증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사례17)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되는 채증

2014년 6월 11일 오전 6시 30분 경, 129번 행정대집행 중에는 시청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시작한다는 고지 직후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백 명의 경찰병력 곳곳에 수많은 채증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었다. 움막 주변에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던 연대자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채증을 했고, 강압적으로 사지가 들러 끌려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채증카메라가 따라붙었다.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 밖으로 밀려나와 고립되어 있는 연대자들을 향해서도 채증은 멈추지 않았다.

101번 역시, 오후 4시 10분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대기 중이던 상태에서 경찰과 한전 직원은 주민과 연대자를 채증하였다. 아무런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채증으로 불필요하게 주민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감시단이 요구했지만, 그 순간 자리를 피할 뿐 채증 행위는 계속 되었다.

모든 현장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는 단계에서부터 채증이 시작되어 대집행과정 내내 무분별한 채증이 지속되었고, 사복경찰이 채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목격되었다. 정복을 입은 경우에도 조끼에 가려져 이름표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찰이 많았고, 채증하는 이유와 담당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물어도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1.2.4 미행과 감시 - 일상적인 사찰

사례18) 귀가 할 때까지 계속되는 감시

11월 6일, 122번 공사가 시작 되고 나서 여수주민들과 도곡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긴 시간 대치했다. 저녁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기 위해 도곡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자 그때부터 경찰차량이 뒤따라왔다. 이를 눈치 챈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내린 뒤 기다리자 경찰들이 “집에 안가세요?” 라고 계속 보채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19일, 122번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채증과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후 주민들 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량이 따라 붙었다. 골목길에 류00씨가 내려 걸어서 들어가자 (그 골목에는 2가구만 살고 있음) 경찰들이 ‘류씨 할머니’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주민들이 들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으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사례19) 일상적인 감시

11월 6일 경, 여수마을 주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목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다른 주민 집 앞에서 경찰이 봉고차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김00씨 집으로 바삐 가보니 사복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냐, 물으니 사복경찰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답하고는 차를 타고 나갔다.

혼자 사는 집구석에 시커먼 옷 입은 남자가 집주변에 서성대니까네 도둑인줄 알고 겁이나데. 근데 차를 보니까 농성장에서 보던 경찰차인가. 그래가 뭐하노하고 물으니까네 길을 잃었다안카나. 그리고 뛰가뿌데. 여기서 길 잃은 사람 참 본다. 다~ 길이 뚫리 있는데 잃어 묵을게 어딴노.
- 주민 김00 증언

사례20)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면서 사찰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사전에 경남경찰청은 현장에서 농성 주민 및 연대자들과 취재기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언론사별 비표를 배포하였다. 그 비표를 이용하여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면서 현장에 있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국제신문 비표를 걸고 있던 경찰이 국제신문 기자에 의해 이미 발각되었는데, 행정대집행이 끝난 129번 현장 부근에서 같은 경찰이 또다시 MBN 비표를 건 상태로 있다가 발각되었다. MBN 기자가 아닌데 왜 비표를 걸고 있는지 질문하자, 해당 경찰은 자신은 경남경찰청 공보담당관으로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것일 뿐 취재는 하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답변하였다.



언론사에 배포된 비표를 걸고 기자를 사칭한 경찰

2.1.2.5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경찰이 밀양에서 행한 통행 제한은 원칙을 벗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응급 상황,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통행, 조력자들의 출입마저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다. 경찰의 상시적 출입통제에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자신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마을의 공간,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경찰의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상실감은 깊어졌다.

2013년 5월 20일부터 투입된 경찰들은 밀양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을 위한 이동까지도 제한하였다. 당시 경찰 측의 경비 지침 상에도 ‘공사항목’ 부분에서 ‘마을에서 출발 시부터 주민 집단 이동 차단, 이동 구간 검문 검색 강화, 인화성 물질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주민이 공사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사현장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3,000명의 경찰이 공사 지역에 배치되어 소수의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평균 3~4km 떨어져 있는 마을 진입로부터 공사현장 인근과 공사현장을 경찰로 에워싸고 2중, 3중으로 통제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농성장으로 가기 위해 길이 나 있지 않은 산길을 3시간 이상 넘어 다녀야했다.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고 오고 가는 길이 쉽지 않다 보니 시간을 빼앗겨 농사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통행제한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혹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밀양에서 이루어진 통행제한은 송전탑 공사부지와 3~4km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원거리 통행제한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나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혹여 위협이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통행제한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11일 행정대집행 하루 전부터 경찰병력은 농성장 주변으로 가는 모든 길을 봉쇄하였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공권력 집행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의 통행권을 제한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량 반입을 제지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외면하였다. 경찰은 통행 제한의 이유로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이로 인해 안전한 길을 두고 위험한 산길을 타게 했으며,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항의하던 주민이 탈진하는 상황마저 초래하였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행해져야 하지만 경찰은 자의적 판단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사례21) 공사현장 봉쇄를 위한 주민의 이동권 제한

2013년 5월 20일부터 투입된 경찰들은 밀양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였다. 상동면 여수마을에서는 경찰이 공사장 진입로가 아닌 마을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였다. 다리 건너편에 마을 주민의 밤나무 밭이 있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해 자비를 들여 만든 다리인데도 단지 공사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민의 출입을 봉쇄한 것이다.

(공사장으로 가는) 다리 폭이 한 4m인데 경찰들이 끝까지 막고 있으니 절개지 높이가 5m인데 밑에는 큰 바위이고. 다리가 막히면 못가는 거다. - 주민 백00 증언

지나친 통행제한이죠. 우리 지금 농성장 있는 데서 위에 공사현장까지 5km 정도 되거든요. 5km 앞에서 막는 다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1km도 심할 것 같은데 5km앞에서 겹겹이 막아서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조금도 접근이 안 되는, 평소에 우리가 늘 다니던 도로를 전혀 못다니게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죠. 그럴 권리가 있는 건지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권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 주민 구00 증언

사례22) 위험사고보다 공사현장을 우선시 하는 경찰의 이동로 봉쇄

2013년 10월3일 새벽4시경 여수마을 여성주민 3인은 농성장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통행금지된 상황이라 마을 사람들조차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산길로 농성을 찾아 출발했다. 이후 산에서 길을 잃어 7시간 이상 헤매다가 겨우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경찰에게 구조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경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며 구조를 하지 못했다.

12월 26일, 132번 진입로에서 장을 보고 마을로 넘어가려는 주민들 통행을 금지하자 주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의 마찰이 일어났다. 낭떠러지 쪽으로 대치 중에 넘어지며 평밭마을 주민 한00씨가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에게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급차는 4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40분간을 쓰러져있었던 한00씨는 응급실을 도착하고

도 오한으로 괴로워했다. 그리곤 하염없이 “살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 달라”며
오열했다.



공사현장 부근 농성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봉쇄한 경찰



비탈진 산길에서 조차 공사현장 부근 농성장으로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

사례23) 행정대집행을 위한 과도한 사전, 전면봉쇄

115번 움막 주변 경찰은 대집행 전날인 10일 오후부터 마을주민과 연대자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오후 8시 경, 농성장 가까이로 차를 타고 들어가려는 수녀들과 인권침해감시단의 출입을 막고 농성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한 후 걸어가도록 하였다.

대집행 당일 오전 10시 경 115번 농성장으로 가려는 연대자 6명을 경찰이 곳에서 고착하였다. 연대자 1명씩 각각 경찰벽으로 좁은 공간을 만들어 퇴로 없이 고착하고 있던 것에 인권침해감시단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약간의 퇴로를 벌려 두었다. 고착이유를 묻자, 지휘관은 “115번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고 연대자들이 가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4개 농성장 모두가 그러했지만, 115번 현장에 위험물질은 없었고,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단하여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하자 지휘관은 “저 사람들을 아느냐,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며 행정대집행이 끝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을 입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러 시청 직원, 한전 직원, 경찰 병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인근 비닐하우스 쪽에 있었던 주민 2명이 농성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경찰이 통행을 막았다.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인권침해감시단의 항의와 ‘내 받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모두 외면하면서 경찰은 계속 통행을 막았다.

101번 읍막은 30여분 등산을 해야 도착하는 산 속에 위치했기에, 주민들이 고립될 소지가 더 높았다. 이를 염려한 연대자들의 발길은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해 묶였다. 6월 10일 밤부터 길이 아닌 곳으로 산을 타면서 새벽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101번 용회마을로 들어가는 용회교를 원천봉쇄한 경찰들



발에 가려는 주민을 막아선 경찰

사례24) 식량반입까지 막은 반인도적인 통제

6월 10일, 127번 움막으로 전달할 김밥을 갖고 오후 6시 30분경 연대자 2인이 왔지만, 경찰이 저지하여 통행이 불가했다. 항의 끝에 장동 입구 움막으로 경찰이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김밥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장동 입구에서부터 통행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김재연, 김미희, 김제남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제외하고 경찰은 변호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김밥 전달을 막을 때 경찰은 통행 제한의 근거를 아예 대지도 않았고, 변호인을 차단할 때는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101번 현장에서는 6월 10일 오후부터 움막으로 오르는 산 입구뿐만 아니라 용회마을 입구에서부터 통행을 제한했다. 주민 외에 경남경찰청이 발급한 비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통행을 금지했다. 오후 7시경 인권침해감시단 2인이 용회마을 입구인 용회교에서 경찰에 의해 막혔다. “주민 외에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과도한 통행 제한의 이유가 무엇인지, 농성장에 저녁식사를 갖다주는 것도 막을 것인지, 인권옹호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인권침해감시단이 묻자,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 통행을 제한하며, 식사는 용회교까지 농성자가 내려와서 받아 가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활동이라 해도 비표 없이는 통행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식사 전달을 하고자 왔던 밀양대책위 활동가가 국가인권위 직원에게 저녁식사 반입에 대해 요청하자 국가인권위 직원은 “경찰이 가져다주면 안되겠냐”고 답변하였다.

사례25) 종교활동을 위해 향하는 종교인들을 억압

129번, 127번 움막으로 올라가는 장동마을 입구는 10일 정오부터 경찰이 배치되어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미사와 기도를 위해 대전에서 수녀 여덟 명이 장동입구에 도착했으나,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제지당했다. 길을 막는 이유를 물으니 경찰은 ‘사고예방’이라고만 밝혔다. “송전탑 관련 민원이 들어와 막고 있다”고 한 경찰도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경찰은 타고 온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경 조경태 국회의원의 중재로 여덟 명 중 네 명만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115번 현장의 경우 6월 10일 밤 10시 경, 천주교 신부 한 명이 농성장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은 한 시간 가량 막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00 대장(경비교통과 작전의경계장)은 서00 신부에게 농성장에 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고 서00 신부가 “밀양주민과 수녀들과 연대하는 종교활동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자 김00 대장은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과 연대자들은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활동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경찰이 종교인의 양심을 재단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 경찰은 사과하지 않은 채 한 시간 가까이 신부를 억류했던 것을 풀고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129번 장동입구에서 약 3시간 동안 출입을 제지당한 수녀들 일부가 국회의원 중재로 들어왔다.

2.1.2.6 익명 뒤로 숨어버린 공권력

경찰은 각종 공권력 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소속을 밝히려는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한 채 공권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주민들을 대했다. 소속과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채증을 남발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법적인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며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익명성

-
- 6)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제3조 제4항)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시(제7조 제4항)에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은 언제나 경찰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컨대 공무수행 중에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복면 착용’도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이다.

이라는 방패 앞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경찰의 식별표식 미부착에 대한 우려는 2009년 국가인권위의 권고⁷⁾, 2011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경찰이 신분 표식을 부착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책임회피, 인권침해 행위이다.

사례26) 식별 표식 미부착

2013년 5월 20일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장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들은 그들의 신분(부대명,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다.

2014년 6월의 행정대집행 당시 10일과 11일 모든 현장에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대기 중인 경찰 일부는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었으나,

7) 국가 인권위는 2008년 5월부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2008년 10월 27일 직권조사 권고를 발표하였다. 당시 권고 내용 중 '경비 업무 시 착용하는 의복에 식별표식을 하고 업무를 담당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식별표식 부착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서는 향후 보호복 등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식 부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8)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A/HRC/17/27/Add.2, 2011.2.21.)

63. 특별보고관은 (중략),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움막 안에 진입한 경찰의 경우 이름표가 대부분 조끼에 가려져 있고, 신분 표시가 없는 제복을 입거나 정복이 아닌 사복 상태라 신분확인이 불가능했다. 채증, 강제이동, 고착 등의 상황에서 이같은 공권력 집행의 이유와 함께 소속과 신분을 묻는 농성자들에게 경찰은 외면으로 일관하였다.

사례27) 신분을 알 수 없는 복장

2013년 10월2일, 단장면 바드리마을 공사부지 진입로의 여경들은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의를 입고 있을 때에는 경찰 개인에 대한 식별표식이 불가능하다. 10월9일, 단장면 평리에 배치되어있던 경찰들 또한 티셔츠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름이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채증을 하는 경찰들이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실제로 경찰이냐고 직접 물어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경찰인지 판단 불가능한 복장으로 채증을 하고 있다



사복 경찰들이 밀양 현장에 곳곳에 있는 모습. 주민은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전혀 알 수 없다.



복면을 쓴 경찰(전의경 뒤편)



복면을 쓰고 주민을 끌어내고 있는 경찰

사례28) 낯설어 하는 주민의 신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복차림의 경찰

사복경찰이 주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사복경찰의 이름을 모르고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경찰이 안다는 것은 두려운 일로, 이는 사찰에 가까운 사생활침해일 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위협적 행동이다. 경찰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불려서 위협과 분노를 느낀 사례가 더 있다고 주민들은 진술하고 있다.

사복경찰이 주민들의 이름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개인사정을 알고 난 후 정보과 형사들도 알고 있는 듯 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경찰의 지위 이름 소속도 모른다. 사복 차림이거나 식별 표시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남성 사복경찰들이 강00씨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건, 아니건 이름을 부르면서 “강00 왜 왔냐? 집에 가지.”라며 조롱하듯 물었고, 심지어 쫓아다니며 이름을 불렀다. 강씨가 “왜 자꾸 쫓아 다니냐, 그냥 놔둬라”라며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 주민 강00 증언

2.1.2.7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7-1)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직무집행



101번 농성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4명의 응급환자는 헬기로 이송되었다.

사례29) 폭우 상황에서 공사장에 있던 주민의 신변 보호 조치 외면

2013년 5월 27일 상동면 여수 마을 주민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파른 산자락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 당시는 공사 강행의 지가 있던 한전마저도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 안전을 걱정한 마을 주민이 정보과 형사를 통해 보호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현장에 방문한 후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최소 안전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철수하였다. 철수 당시 경찰은 새벽에 주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올라오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폭우가 밤새 내리고 있었던 점, 산 위에 있던 주민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오후 3시부터 비가 와서 할머니 네 분을 먼저 보냈어요. 나머지는 한전에 협상에 들어갔어요. 공사를 중단하면 할머니를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비 그치면 5시 반부터 일을 한다고 하니 할머니들이 안 내려왔어요. 한전에서는 우리 대표들이 주동을 해서 할머니들을 못 내려고 오게 한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6시쯤에 경찰에 전화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할머니들이 산에 있으니까 지켜야겠다. 절개지도 많고 하니. 119, 경찰이 출동하고. 이장님도 욱을 봤어요.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려다 못 내려오시고 같이 자게 되었어요. …… 그날 저녁에 철수하면서 내일 새벽 5시에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경찰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내려오다 뼈를 다치셨죠.

- 주민 백00 증언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013년 5월 27일, 당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폭우중에서 숙박농성하면서 1박 2일을 하면서 비를 피했던 임시 천막(출처: 오마이뉴스)

사례30) 기본적인 안전 조치 방해

2013년 5월 2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28일까지 밀양은 최고 기온이 33.8°C에 이를 정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하루 종일 있었기에 열사병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강한 햇

10) 기상청 지난 날씨 데이터 http://www.kma.go.kr/weather/observation/past_cal.jsp?stn=288&yy=2013&mm=5&obs=1&x=24&y=14

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인 차양막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막았다.

사례31)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고 고착공간에 방치

2014년 6월 11일 115번 농성장에서 허리부상을 입고 초기에 호흡곤란 증세도 보였던 강00씨의 경우, 경찰은 주위에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강00씨를 구급차 가까이로 이동시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고착시켜놓은 공간 안에 방치하였다. 연대자들이 경찰들에게 들것을 빨리 갖다달라고 요구했지만 5분여동안 기다려야 했다. 강00씨가 있던 공간에 여러 명의 연대자들을 경찰이 강제로 데려다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강00씨 위로 다른 연대자들이 넘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응급 후송될 때까지 강00씨는 강한 햇볕을 그대로 쬐면서 심한 흠먼지 속에서 그저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다.

사례32) 의료진 없는 대집행 현장, 119의 진입도 지체

2014년 6월 11일, 127번 농성장의 경우 농성장 10미터 아래 지점에서 실신한 상태의 주민과 함께 대책위 활동가와 수녀가 고착되어 있었다. 대책위 활동가는 주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119를 요청하였다. 우선 들것을 가져와서 119가 들어올 수 있는 지점까지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현장에는 들것이 없었다. 모포로 감싸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옮기려고 하는 경찰에게 무리하게 옮길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으니 119 대원이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119 대원이 주민을 응급후송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상황 종료 후, 길가에 구급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대기 중인 구급대원에게 119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구급대원은 몇 개 지역에서 구급차가 동원되었지만, 127번 현장까지 도로가 매우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 대가 올라가면 다시 한 대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사 차량들이 오가면서 구급차 운행이 뒷전으로 밀렸고 좁은 도로에 경찰 병력이 줄지어 앉아 있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근무교대를 하는데 127번은 행정대집행이 9시 경에 진행이 되어 늦어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집행 현장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127번 농성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겪던 주민은 약 30분 만에 응급후송될 수 있었다.

사례33) 의료지원단을 고착하며 응급조치 방해

2014년 6월 11일 101번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산 속에서 다수의 응급환자들이 발생하였다. 의료지원을 위해 현장에 함께 있다가 바깥으로 끌려나온 의료지원단이 응급환자들에 대한 긴급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착상태를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며 가로막았다. 또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가 고착상태에서 나가는 것도 제지하여 거센 항의를 받았다.

2.1.2.8 공무집행 미고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의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임의동행’임을 고지했다고 증언하나, 고령의 주민은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34) 통행제한의 근거 제시에 대한 묵묵부답

2013년 10월 9일 상동면 도곡리에서 인권침해 감시단과 주민들이 경찰 측 통행제한의 근거를 물었으나 현장 책임자가 통행제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고, “밀양 경찰서 상황실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단장면 평리에서도 통행을 제한하면서 ‘상부지시’라는 점 이외에 통행제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사례35) 이유나 권리에 대한 고지 없는 연행

2013년 10월 10일에 공사 재개 후로는 처음으로 주민이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일 새벽 109번 현장에서 산으로 오르던 경찰병력에 항의하던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축분(소오줌)을 서너차례 바가지로 뿌렸고, 경찰은 오전 11시45분경 두 주민을 연행해갔다. 그러나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채증 된 사진을 들고 “죄를 지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임의동행 한 것이다.

사례36) 이유와 근거를 물어도 대답없이 계속되는 고착

2013년 10월 22일 산어린이학교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 13명과 교사 2명을 경찰은 1시간가량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금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오전 7시반경 바드리 마을 입구에 레미콘이 들어가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마을 입구까지 갔으나 주민들이 고착되는 걸 보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막아서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으로 빙 둘러쌌다. 당시 교사인 한00씨는 아이들이 두려워할까 걱정되어 경찰에게 항의도 제대로 못한 채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대책위 활동가가 와서 왜 막느냐고 항의하니까 경찰은 길을 터주었다. 길을 터준 후에도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감금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어디가냐고만 물었다.



영문을 모른 채 학생들이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사례37) 중복 집회신고 접수 내용과 통행제한 근거 요구 외면

2013년 10월 24일 오전 7시 22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밀양댐 입구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했다. 출입문에 게시된 이상한 집회신고접수증(2013-128호)과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 달라고 감시단은 요구하였다. 7시 40분경 항공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착했고 이후 7시 46분경 경찰병력 2~3대가 도착했다. 감시단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밀양서 경감에게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출입구에 걸린 옥외집회

신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에게 확인해주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한전의 문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전 측 직원에게 “협조할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찰차 근처로 갔다.

2.2 비인도적인 행태

각 현장의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지 주민들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처해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평가는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경찰의 통제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마저 제한되는 비인도적 상황과, 주민들을 향한 모욕적인 말과 고압적인 태도, 주민들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경찰의 언행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단지 통행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농성장의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음식, 생수, 천막, 보온용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거나 반입의 제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고령의 주민이 노숙을 하며 지내는 상황에 건강이 염려되자 주민건강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 의사도 출입이 통제되었다. 주민과의 대치 상황에서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기자나 인권침해감시단 등 외부의 시선이 있을 때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었다.

더욱이 경찰은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경찰들이 주민들의 아침밥을 전투화로 걷어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경찰은 故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비인도적인 행태를 보였다.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그 의미를 축소하려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죽음이 개인의 문제인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시민분향소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과정에서도 경찰의 비인도적인 행태들은 끊이지 않았고 모욕과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을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공분을 사게 되고 책임을 물었지만, 경찰은 사과 한번 없이 책임자들에게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진압과 송전탑건설의 공로를 대대적으로 포상했을 뿐이다.

2.2.1 언어폭력을 비롯한 모욕적 처우

경찰은 5월 21일에 긴급 구제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인권위 측의 조사에서도 나오듯 주민들에게 “씨0년”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다. 이에 당시 현장의 인권위 현장조사단이 현장 출동 경찰에게 주의 및 교육을 당부하기도 하였다.¹¹⁾ 당시 경찰의 경비 지침상에 나온 ‘성적 발언, 욕설, 반말, 침뱉기, 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자극하여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지침마저

11) 5월 공사 재개 당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인권위 직원) 활동 보고 중 일부

‘작업 현장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한영 과장, 김수성 중대장 등)에게 경비업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로부터 욕설과 거친 행동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주의, 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 측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도 확실히 주의,교육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현장에서는 무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인 주민들에게 경찰의 일상적인 욕설은 모욕감을 유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게다가 여성을 대상으로 '씨0년'과 같은 성폭력적 발언을 한 점은 경찰 스스로가 성폭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는 황당한 사례이다. 전의경에 대한 일반적인 반성폭력 교육을 비롯한 인권 교육의 부실은 결국 현장에서 이러한 성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¹²⁾

경찰들이 한전 공사 관계자 5명을 에워싸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오물을 뿌리니까, 경찰이 "씨발년,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욕설을 했다. - 주민 곽00 증언

2013년 5월 21일 11시 경 4명이 차를 타고 부북면 평밭마을 127번 송전탑 건설현장 근처에 왔는데, 경찰 등이 차를 막고 진행을 제지하여 차 창문을 열고 비키라고 하니 경찰이 "씨발년", "개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여 차에서 내려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욕을 하나고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니까 도망갔다. - 주민 정00 증언

사례46) 막말, 폭언과 함께 힘으로 제압하며 위협하는 경찰

2014년 6월 10일 129번 농성장에서는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움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을 밀양경찰서 정보과장은 힘으로 제압하며 폭언을 해댔다. 오후 101번 현장에서도 거침없이 주민에게 막말하면서 밀어내는 밀양경찰서 정보과장이 목격되었고,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실 보좌관이 항

12) 국가인권위는 2010년 6월 14일 전의경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의경 집단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전의경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으나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

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주민을 힘으로 제압하며 폭언하는 밀양경찰서 정보과장



인권침해감시단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밀양경찰서장

2.2.2 수치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모욕적 처우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빈번한 경찰은 고착상태에 서서 뿐만 아니라 마주칠 때마다 주민들의 주민들에게 인격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우를 하였다. 주민들이 공사 현장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찰이 강제로 막아서거나 감시하면서 인격적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이 행사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언론의 취재 기자 등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바뀐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권력의 비인도적 행태 경찰은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경찰들이 주민들의 아침밥을 전투화로 걷어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2013년 5월 22일, 132번 송전탑 헬기장 건설을 막기 위해 할머니 8명이 굴착기가 일을 못하도록 에워쌌다. 그리고 나서 한전 직원 인부들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소변을 급하게 보려고 나서려고 했는데 경찰이 보내주지 않아 그 자리에서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수치스러웠다. - 주민 한00 증언.

우리 첫날 경찰하고 대응했을 때 우리는 올라갈라카고 경찰은 못 올라가게 저지를 할 꺼 아닙니까. 그 순간 많이 벌어지는데. 경찰들이 하는 말이 '끌어내' 카는 거. 그건 인격적 모욕이거든요. 끌어내. 할머니 들을 보고 끌어내 카는 거는 인격적 모욕이고. 우리처럼 촌에서 살아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70 80 평생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을 건데. (중략) 좋은 말로 하고 할머니 카면 되는데 첫머디가 지휘하는 사람들 말투가 그런가 인간성이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대하는 말투가 처음에는 다르니까 할머니들은 분노할 수 있고 평소에 안 듣던 말을 어르신들이 지금 다 듣고 있던 말입니다. 끌어내. 밀쳐버려. 이 소리를 들으니까. - 주민 김00 증언

125번 공사 들어간 날은 하다못해 인제 뭐야 화장실 가는 거를 산에서 불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불일 보러 가는 걸 제지를 안했어요. 그 날은 그것까지는 막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불일 보러 산으로 가면 따라와 가지고, 내 불 일 본다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을 통해서 다른 현장으로, 125번으로 갈까 싶어서. “내 짐 너무 급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봤잖아. 김00씨. 김00가. 그 애들 방패 서있는데서 봤잖아요. - 주민 신00 증언

틀리죠. 기자분이 계시거나 이러면 말하는 것부터도 유해지죠. 부드럽게 할라고,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에는 만약에 자기들이랑 우리랑 부딪힐 경우에 그야말로 때 가장 쳐요. 잡아 땡기고, 밀고, 그런데 카메라가 있거나 외부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조금씩 조심 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으면 진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죽어도 모르겠구나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 주민 신00 증언

사례47) 주민들의 아침밥을 전투화로 걷어찬 경찰

경찰은 고담마을에서 내려다보이는 공터에 숙영시설로 쓸 컨테이너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6일과 7일에 걸쳐 주민과의 충돌이 있었다.

7일 아침 7시가 되어 아침식사가 배달되자 모닥불 곁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때 경찰 버스 6~7대가 주민들 곁으로 진입했고, 순식간에 주민들을 에워싼 경찰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식사판을 덮어버렸다. 일부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밥그릇을 발로 차 버렸고, 격분한 주민들은 '밥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네놈들이 인간이냐?' 면서 울부짖으며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주민들이 구석으로 고착당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틀 사이에 10여명이 다치고, 8명이 응급 후송되고, 6명이 연행되었다.

2.2.3 신체의 자유에 대한 모욕적 침해

경찰이 주민들을 강제로 옮기거나 노상 감금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을 수치심과 무력감에 빠뜨렸다.

사례48) 강제로 구급차에 신고 이송

2013년 10월 2일 126번 공사현장 인근에서 농성중이던 주민 한 명을 경찰이 이불로 말아 강제로 119구급차에 신고 이송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주민은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경찰과 119 구급대의 행동은 사실상 강제 납치로 보인다.

한 사람을 거진 스무 명이 에워싼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한전 공사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보기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담요에 뭉뚱 말아서 119에 신고 가려고 우리를 에워쌌던 거야. 안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일. 진짜 무슨 짐 꾸러듯이 싸가지고 신고 갔거든요. 그럼 너무 비참하지. 안가겠다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무슨 짐짝 신고 가듯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동네 내려가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니깐 그 동네에 도방동 쪽에 사람이 물어봤대요. 이 분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는 거냐고. 119 사람이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구요. - 주민 신00 증언

사례49) 사지를 들어 강제이동 시키면서 탈의가 되도록 밀어붙이거나 주민의 신발을 벗길 것을 지시

2013년 10월 16일 단장면 바드리 마을에서 경찰은 도로에 앉아 있던 여성 주민들을 도로 밑 캠핑장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경찰 지휘관은 여성 주민 한 명

당 여성경찰 6명과 남자경찰 1명이 붙어서 사지를 들고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
'주민의 신발을 벗길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침에 서가 있었는데 여경들이 내몸을 잡아부니까 자연히 사람이 눕게 되더라고요. 끌려가는 비참함 꼴을 보이기 싫어서 누워부니까. 한 팔에 두서이서 달라붙어 묵하고 이래 다리 들어부니까 내가 꼼짝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 몸 하나를 버티는 건데 옷을 우에하다본게니 여경들이 저 옷까지 벗겨질 지경까지 됐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지니까 나도 우에 돌아갔는지 상황이 잘 모르겠고 머리도 희미하니 그런데. 몸싸움을 하다본게네 난 몸 안 끌려갈라꼬하고 하니까 우에 옷이 벗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이 벗겨져있더라고. 완전히 위에 티가 다 벗겨져있더라고 잠바만 걸쳐져있는 상태고 티가다 벗겨져 있더라고. - 주민 이00 증언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못 막아가지고 우리가 뭐를 잡고 있다가 뺏긴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그때는 막 울고불고 막 구르는데 겨우 진정을 시켰다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라겠노 싶은 그런 마음이 탁 들드라고. 정말 그때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비참해. 딱 들어가드만 포크레인 소리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해야 되나 정신이 제정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마 경찰을 밀어 붙이면서 비키라. 그래 가 또 하면은 할머니 이제 그만그만 이러는 거야 우리보고. 우리가 뭐 장난치러 온 거도 아니고 그게 하면 우리가 밀고 들어가겠다, 뚫을라고 하면 한참을 하다보면 애들이 힘드니까 저그 애들이 힘드니까 그만 좀 하라는 거야. 그만했으면 됐다는 식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거라. 그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이러는거야 진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저거는 무슨 장난 비슷하게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 주민 강00 증언

2.2.4 故 유한숙 어른신의 죽음에 대한 왜곡과 추모의 권리 박탈

12월 4일 오전, 고 유한숙 어른신께서 자녀를 통해 '대책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오후 1시경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상황실 활동가가 찾아간 자리에서 따님을 곁에 두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그런데 11월경에 한전 과장 1명과 또 다른 1명이 찾아와 (우리집이) 송전선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알게 되었다. 150m인지 200m인지 가까이 에 철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 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

그러나 밀양경찰서는 12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인의 사망에 대해 “음독현장에 같이 있었던 가족을 상대로 음독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던 바, 특정 사안으로 음독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자녀의 진술은 경찰의 보도자료와 다르다. “12월 3일 새벽 2~3시경에 경찰관 3~4명이 아버지가 후송된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왜 음독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시며 ‘송전탑 때문에 약을 마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곁에 있던 경찰관 1명이 휴대폰으로 녹음해갔다”고 한다.

故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으로 유족,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 밀양 대책위와 연대자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조차 경찰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故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조차 왜곡하는 발표를 하였다.

밀양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희생은 2012년 1월 故 이치우 어르신에 이어 또다시 故 유한숙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고인의 죽음을 모독했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한 분향소는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는 패륜적 행위들이 이어졌다. 밀양시민분향소와 서울시민분향소 모두 경찰의 공격을 받았고 짓밟혔다.

2013년 12월 9일 고 유한숙 어르신의 밀양 시민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큰 충돌이 발생했다. 밀양시청 앞으로 시민 분향소 설치를 위해 주민들이 이동하자 충돌과 함께 경찰 병력이 밀양시내를 촘촘히 막아섰다. 시민들은 시민체육공원 들머리에 시민분향소를 위한 천막 2동을 설치했다. 그러나 경찰 100여명이 몰려와서 3차례에 걸쳐 진입하여 결국 천막 2동을 모두 부수고 찢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 4명이 119구급차량에 응급후송되었다.

결국 노천에서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노숙할 태세로 추운 날씨 속에 노천 분향소가 유지되었다. 유족들이 노천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난 뒤, 날씨가 몹시 추운 상태에서 노천에서 분향소가 유지되는 것은 고령인 다수 주민들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밀양시청과 협의하여 시민분향소 설치가 될 때까지라도 임시로 천막설치를 해 줄 것을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정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상부의 지침이므로 어렵다'고 답변했고, 충돌이 이어졌다.

12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송전탑공사 중단 및 故 유한숙 어르신 추모기간 선언 기자회견 후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이 깔개를 내리려는 차량을 견인 시도했으나 견인에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분향소 테이블과 쪼대 등이 파손되고 화환도 부서졌다. 연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 시청 안에 연좌하면서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2.2.5 연행위협과 반인권적인 폭행

경찰은 주민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거나 연행하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위협했으며 실제 무리한 체포와 편파수사로 본보기를 만들어가며 주민들을 위축시켰다.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는 폭력행사를 통해 더욱 직접

적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6~70대 고령의 여성이고, 대부분의 공사 지대 및 시위 지역이 산악지대나 경사가 심한 곳들임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들의 박탈감과 모욕감을 증가시켰다.

2.2.5.1 법적 조치에 대한 압박을 내세운 위협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 형사고발 등의 위협을 자주 가하였다. 주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급박한 상황도, 경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여겨질 수도 없었다. 이처럼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이 형사 고발 등의 위협을 가했다.

경찰이 법조문을 언급하며, 체포, 구금, 형사고발 등 협박하고, 욕설, 반말(난임무만 하면 된다. 당신들 다시 볼 일 없다 등)을 했다. 경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을 보호했으면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한전편을 들고 공사 강행을 유도하고 있다. - 주민 김00 증언

2.2.5.2 공권력의 폭력행사

사례50) 일상적인 폭력행사

2013년 10월 3일 126번 농성장에서는 천막 돌려달라고 경찰 방패를 붙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손을 경찰들이 주먹으로 내려치는 장면 여러 차례 목격되었

다. 이미 매일 농성장을 지키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손과 팔 주변에 멍이 든 상태였다.



단식 농성 중 건강악화로 10월 3일에서야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의 멍으로 가득한 팔.

사례51)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직접 지휘하는 공사강행을 위한 감금과 폭행

2013년 10월 22일 오전 5시경부터 바드리 마을 입구 다리에 경찰 200명 가량이 통행을 차단했다. 레미콘 차량들이 금곡교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가려 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고착당했다. 6~10명의 여경들이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긴 후에 자갈길에 던졌다. 주민들은 여경들이 어깨를 비틀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

했다. 이로 인해 70대의 윤00씨를 비롯한 고00씨, 손00씨 등 주민 여러 명이 온 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에서 4Km나 떨어진 마을입구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오로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행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자 과잉 폭력이다. 특히 이 날의 인권침해는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진두지휘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우발적인 폭력이라 보기 어렵다.

사례52) 공사차량을 주민들에게 전진시키며 안전을 위협

2013년 10월 24일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 자재 야적장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도착하자 바로 출입구에 와서 법적 근거도 없이 해산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한전 측 직원을 나오게 한 후에는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주민들이 있는 앞으로 오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시를 하였다. 탱크로리가 1m 정도 앞으로 오게 한 후, 여경들을 불러 바로 주민6명을 여경 20여명이 들고 옮겼다. 당시 지휘관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묻는 감시단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래쪽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8시반경 78세 할머니가 여경의 팔꿈치에 부딪쳐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머리가 부딪힐 리가 없다며, 응급조치를 취하려는 감시단의 출입까지 막으려 했다. 감시단은 할머니의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명이 안보이냐고 항의했고, 그제야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탱크로리를 주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찰



이마를 다치고 쓰러진 주민

2.2.6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 금지 및 제한

식사·식수, 잠자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봉쇄당하여 추위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통행제한(금지)과 관계가 있다. 통행을 제한하면서 식사, 생수 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 것들이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되고, 천막, 이불 등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물품들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2013년 10월 공사재개) 첫날에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저희 마을회관에서 계속 경찰 눈을 피해서 산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천막 치는 곳으로 갔거든요.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민들 통제하니까 못 올라갔고,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못 오고. 그 날은 먹는 것도 안 보내줬어요. 이불이니 이런 것도 안 보내줘 가지고 저희 이장님이 계속 산길로 정상적인 길로 못 오니까 배낭에 먹을거나 이런 것 신고 왔거든요. 어른들 드시게 하고. - 주민 신00 증언

사례53) 비닐 한 장으로 산 속의 밤을 지내게 한 천막 압수

2013년 10월 2일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현장)에 주민들이 천막을 쳤으나 경찰에 의해 바로 철거되고 압수당했다. 주민들 2~30여명이 비닐 한 장 치고 산속에서 밤을 지내야 했다. 특히 주민들이 단식 중인 주민 3인 만이라도 천막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외면했다. 단식 중인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공권력은 1m 거리에서 방패를 들고 선 채로 방치했다. 현장의 경찰 총책임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4일에서야 돌려주었다.



126번 농성장. 경찰이 천막을 빼앗아 간 후 비닐 한 장으로 바람을 막고 있는 모습.

사례54) '봐 줄 만큼 봐줬다'며 생필품 차단하는 경찰

10월 3일 오후 5시경 단장면 바드리마을(89번 현장)에서 주민들이 해가 저물어 기온이 떨어지므로 이불을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차단했다.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30여분 후에 반입되었다. 이후 깔판과 서리를 피할 비닐 반입도 차단되었다. 차단 이유를 묻자, 경찰은 집회시위용품이므로 반입할 수 없다며 “밥과 물이면 충분하다. 봐 줄 만큼 봐줬다”고 대답했다. “그럼 찬 바닥에 서리를 맞으라는 거냐”며 항의하고 차단근거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에 일부만이 반입되었다.



바드리 마을(89번) 입구에서 기온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구해온 이불을 차단하는 경찰

2.2.7 응급진료 및 신뢰 할 수 있는 의료지원에 대한 통제

주민들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위의 농성장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없는 노숙, 길 없는 곳을 이용한 산행 등 무리한 통행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고령의 주민들의 건강은 상시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천막 설치나 생필품 반입, 통행 제한 해제 등이 필요함에도, 경찰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진이 신분증을 보여줌에도 출입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는 한전의 구급차가 대기 중이나, 자격 있는 의료진인지 의심스러우며, 부적절한 응급 진단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 따라 119 구조대가 대기하는 곳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주민들은 경찰과의 충

돌 후에도 산 위로 119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경찰은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태도지만 이것은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가 아니라 주민이 쓰러지면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은 주민들이 농성장에 머무르는 한 건강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진의 출입과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물품 반입 등을 통제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가 현실화된 자에 대하여 의약품 반입 차단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주민이 음독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구급대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밀기 어려운 일조차 발생하였다. 밀양의 경찰들에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최소한의 의식도 없다. 송전탑 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위에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들이 주무시겠다. 내일도 저놈들이 못 올라오게 거기서 막으면 우리도 못 올라온다 하면서 거기서 잔다는 거야. 거기를. 그래 그럼 우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자면은 오늘은 아무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라 우리는 못가겠다. 할머니들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이불도 아무 것도 없다. 맨 땅에 자지. 그냥 갑빠만 하나 깔아놓고. 덮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있을 게요. 이려고 젊은 사람 몇명이 같이 있었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전화해서 올라온다는 사람들한테 올라오면서 내 혈압약, 신장약 이런 약을 드시니까. 우리집 가서는 무슨 약 가오고, 시켰어. 머 툭툭한 잠바 하나 가온나 시켜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 항상 우리 막는다는 그 묘 있는데 거 김밥하고, 짐을 지고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

산에서. 그 딱 가니까 막더라네. 못 간다 하면서. 왜 못 가냐. 이 밥이다. 저 위에 사는 사람들 밥이다. 이러면서 이라니까. 한 끼 굶어가 안 죽는다 하더라네. 한 끼 굶어서 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경찰이 막았으니까. 한 끼 굶어서는 안 죽는다 하더라. 물론 한 끼 굶으면 안 죽어. 안 죽기는. 거 약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약은 경찰이 우리보고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더라대. (중략) 까는 거 몇 개하고, 이래 왔어. 위에 비닐종이 덮으라고 비닐종이하고, 하얀 모포, 아니 못자리 할 때 위에 덮는 하얀 천 같은 거 하고, 덮고 자라고, 이불 같은 거는 일체 안 올려주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이불 같은 건 일체 반입이 안 된다는 거야. 가면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아휴 안 된다는 거야. - 주민 강00 증언

사례55) 단식농성 중인 주민을 진료하러 가는 의료진까지 차단하는 방문금지

2013년 10월 1일부터 126번 현장에서 주민들은 3일 이상 물까지 끊은 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장으로 가는 길목 곳곳을 가로막은 경찰 때문에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료진을 포함한 활동가들까지 방문을 금지당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가로막힌 길목을 돌아 산길로 가던 일부 시민들이 다쳐서 응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사례56) 부적절한 의료진을 둔 채,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차단

2014년 10월 3일 126번 현장에 한전 측 구급차(한전의료재단 구급차) 직원이 가운을 입고 단식 농성 주민들을 진료 하려 하자, 의사가 정말 맞는지 문자 대답하지 않았다. 10월 3일 109번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 후 들려나와 바닥에 누어진 주민에 대해 한전측 의료진이 눈을 뒤 집어보고 의식이 있으니 괜찮다며 방치했다. 주민측이 119를 불러 후송할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한전측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주민은 후송된 병원에서 갈빗대 2대가 부러진

것으로 진단 받았다.

10월 5일 오전 7시경 한의사 2인이 126번 현장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올라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시간가량 진입하지 못했다. 한의사가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하자,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요청하여 현장에 갈 수 있었다. 차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들고 걸어갔다.

사람이 처억 들려 나오는데 추욱 늘어진거야. 그날 땅에 비도 오고 이랬어.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땅이 축축했어요. 이런 자리도 없고, 저런 것도 이런 깔만한 거 없었어. 대충 몸 그거 할꺼만 깔고, 사람을 눕힌 거야. 그래 한전에서 의사라고 있어. 저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 그 할머니 눈을 이리 뒤집어보더만은 의식이 있어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 괜찮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랬노. 니가 의사가? 의식이 있어 괜찮다. 이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럼 여서 사람이 죽으라는 거냐고 뭐꼬. 이러면서 의식이 있어 괜찮다면서 그래서 욱을 진탕했어요. 들어가라고. 의식이 있어 괜찮다. 이기 무슨 말이냐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많이 안 다쳤나. 이게 아니고, 의식이 있어 괜찮다라는. 그게 무슨 그거냐고. 그 때 119를 불렀어. 부르니까 헬기가 못떠 안개가 많이 끼 가지고, 비가 오니까. 거기 헬기가 안 되니까. 그니까 대원들이 올라와갔꼬, 이거 하는데, 저거 올라오는 시간이 젊은 사람이라도 50분 걸리니까. 개가 다시 내려가고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갔다 안카나. 우리는 허리를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간 거야. 두 시간 넘게 거기 누워있었을꺼야. 공께 119가 올라온 거야. - 주민 강00 증언

사례57) 119 구급대원 출입제한

2013년 12월 13일 오후 2시경, 96번 현장 옆 황토방 농성장에서 이 마을주민 아무개씨가 수면제등이 포함된 다량의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여 응급 후송되어

밀양병원에서 2차례의 응급 위세척 후 현재 마산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당시 아무개씨는 남편에게 '수면제 40알을 먹었다'며 전화를 하여 남편 A씨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급히 산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증 제시(이분들은 실제 마을 주민들로 경찰은 서로 얼굴들을 알고 있었음)를 요구하고 상황 육하원칙을 대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주민등과 육하원칙이 필요하냐”며 항의하였고, 경찰의 계속된 주민증제시 요구에 결국 집에 다녀오게 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또한 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자, “왜 안 올라가느냐”는 주민의 항의에 “경찰이 못 올라가게 했다, 약이 아니라 술만 먹었고 경찰이 말하더라”고 하여 주민의 항의 끝에 산위로 올라 갈 수 있었다.

2.2.8 진압에선 폭언하며 비웃고 진압 후에도 주민들을 조롱하는 공권력

2014년 6월 10일 행정대집행은 각 읍막별로 불과 20~40여분 만에 완료될 만큼 단시간에 이루어진 폭력적인 진압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경찰 간부들은 “빨리 해치워버렸다”며 깔깔대기도 하였다. 폭력 진압, 불법적인 채증과 고착 등의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을 비웃고 폭언하며 힘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의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조롱은 송전탑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어져, 밀양송전탑 관련 ‘유공’으로 무더기 표창과 특진으로 주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127번 읍막 철거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끌려나온 주민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응급 상황에서 “어르신이 숨이 가쁘다. 빨리 들 것을 가져와달라” 요구하는 대책

위 활동가에게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하였다.

101번 움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의 병원 후송이 더딘 상태에서 여전히 헬기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서는 일부 경찰들이 진압작전을 기념하면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단체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졌다.



101번 진압 후 V자를 그리며 단체로 기념 촬영하는 경찰들



129번에서 강압적으로 끌려나온 뒤 기도하는 수녀들을 향해 웃으면서 계속 채증하는 경찰

3. 경찰력 집행의 문제점

3.1. 한전의 사설 경비업체로서 기능한 공권력

한전은 5월 20일 공사 재개 직전인 5월 8일에 경찰 측에 ‘공사재개 예정 통보 및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질서유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경찰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¹³⁾ 이에 따라 경찰은 5월 20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500여 명을 매일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전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대한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¹⁴⁾ 이런 행위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당시 경찰의 경비 지침은 안전 보호보다는 통행 제한, 검거 등을 통해 한전 측의 공사 진행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 경비 지침에 그나마 있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의 목숨을 내건 저항에 정부와 한전은 공사재개 10여일 만에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다.

2013년 5월 20일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은 시설물 보호를 명분으로 주민의 공사 현장 접근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주민의 안전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

13) 한전이 부산경남개발청장 명의로 경찰 측에 보낸 공문 일부

‘…… 공익사업인 본 공사 재개 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물리적 충돌 방지와 사고예방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병력투입 등 관련조치를 요청하오니 엄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14) 오마이뉴스, “할머니들 옷 벗고 항의... 부상자 3명 병원 후송”, 2013. 5. 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6885

및 국제 기준¹⁵⁾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2013년 10월 30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남경찰청장이 공권력 투입이 과도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하고 그동안 자행된 인권유린, 과잉진압의 과오를 일부 시인하거나 시정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에도 잔인한 진압이 이루어져 주민 여러 명이 다쳤고, 그 이후로도 공권력의 폭력은 계속되어 2014년 6월 행정대집행을 명분으로 한 진압작전에 이르게 되었다.

3.2. 경찰관 직무집행법과의 충돌

경찰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있다.

공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위자인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서 최소한의 원칙을 살필 수 있다. 경찰관의 권한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또한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

15)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33(1990)

4. 직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관들은 물리력과 화기 사용에 의존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의도한 결과를 이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거나 다른 수단들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물리력과 화기를 사용해도 좋다.
5. 합법적인 물리력과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언제나, 법집행관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위법행위의 정도와 합법적 목표에 준하여 물리력과 화기 사용을 자제한다.
 - (b)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4조 제1항).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송전탑건설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주민과 연대하는 시민들 위에 군림하였다. 2013년 10월 1일 새벽을 틈타 밀양에 3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고작 200명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서. 한전의 공사 시작이 예정된 10월 2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을 사전에 투입하여 마치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듯, 송전탑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듯 그렇게 경찰이 밀양을 점령했다.

사태는 악화되었다. 밀양주민들은 2012년 故 이치우 어르신에 이어 2014년에는 故 유한숙 어르신을 잃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인 언론 플레이와 시민분향소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비인도적인 행정조치들, 공사지역이 마을 인접지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충돌과 무리한 형사 처벌 시도 등이 발생하였다.

밀양에 대규모로 주둔하며 인권침해의 목록을 더해가던 경찰은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의 ‘진압작전’으로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송전탑 완공만을 향해 치달았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또한 번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곁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폭력의 상흔을 남겼다.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태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밀양주민과 시민들에게 정부는 경찰 책임자들의 밀양송전탑 공로를 인정하는 특진과 표창의 포상으로 답했다.

4. 불처벌의 문제

4.1 폭력 경찰관에 대한 단 두 건의 경고 조치와 한 건의 주의 조치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밀양대책위는 인권단체 등과 함께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제기하였으나, 해당 경찰관이 징계 및 사법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일한 사례는 2013년 11월 1일, 상동면 도곡마을 입구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활동가에게 “아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한 창원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와 2013년 10월 바드리 입구에서 활동가에게 “아가리에 똥물을 쳐 넣어야 한다”고 폭언한 밀양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 그리고 바드리 입구에서 음주한 채 주민 고준길 님을 강제 연행한 밀양경찰서 소속 C 경위에게 내려진 ‘주의’조치이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지 않으며,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 주의는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4.2. 밀양송전탑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 및 승진 잔치

2015년 10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고, 집회시

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로 살인진압을 주도한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2015년 1월,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하였고, 현재 종로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다.

밀양에 공권력을 투입한 책임자인 이성환 당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고, 밀양송전탑 지휘 책임자인 이철성 당시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청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재직중이다.

5. 경찰력 집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결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특히 2014년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는 총 250회에 달한다.

2013년 10월, 13차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이 하루 3000명씩 밀양에 주둔하며 계엄군처럼 노인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4년 2월 까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밀양 주민 10명중 1명이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이 높은 불안 및 우울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당시 밀양주민들의 답변 일부를 옮겨 본다.

- 경찰과 충돌해서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남
- 경찰이 손목을 비틀
- 경찰에게 밟힘
- 여경들이 꼬집고 들고 나간다.
- 팔을 잡아당겨 아픈 게 나아지질 않고, 수술한 무릎을 밟혔다
- 전에 한 번 경찰한테 붙들려 나올 때 손발로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는데 담날 되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못 들겠더라고. 엉덩이 뒤 닦을 힘도 없고.
-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보이려고 해서 마음이 상함. 그생각만 하면 눈물이 남
- 경찰들이 개취급한다.
- 산위에서 길잃고 구르고 하여 불안하고 공포
- 손자같은 애들한테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
- 맨날 사진찍고 고발하겠다고 함
-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체포한다는 말로 위협 / 우울증
- 경찰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못가게 잡는다. 왜 올라가느냐, 그쪽으로 가지마라
- 경찰이 길이라는 곳은 다 지키고 있다.
- 휴일에 아이들이 와도 경찰들이 막아서 다니기 힘들다.
- 경찰 때문에 운다.
- 저놈들에게 맞을까 무섭다. 집밖에 나가기가 무서움. 병신처럼 산다는 자괴감, 사는게 사는 게 아님
- 또 밤에 눈만 감으면 경찰이 버글버글버글해. 나 막 잡을라카고.

6. 진상규명의 과제와 필요성

밀양송전탑은 피어린 역사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진상조사 보고대회 등을 통해 경찰의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했지만, 지금까지 해당 경찰 지휘 책임자가 단 한 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다.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밀양 주민들은 경찰의 폭력이 남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밀양의 사례는 경찰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사설 경비업체로 전락한 것으로 수치와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밀양송전탑 경찰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 작업은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정당한 위엄을 되찾고, 공권력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④ 재개발현장에 대한 경찰력 집행

용산참사, 과도한 경찰권 남용이 부른 국가폭력 참사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1. 용산참사 개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변 재개발 현장(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강제퇴거에 맞서 망루 농성을 하던 철거민 세입자들에 대해, 경찰력 투입으로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대형화제가 발생하여 철거민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일명 ‘용산참사’)이 발생하였다.

철거민들은 사건발생 전날인 1월 19일 새벽 용산 한강로 변 빈 건물(일명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용산 4구역 철거민들과 연대지역 철거민 36명이 농성에 돌입했고, 경찰은 19일 당일 농성 진입계획을 수립해 20개 중대 1600여명의 경찰을 배치, 50여명의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과 함께 물대포를 쏘며 진압작전 개시했다.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의 정점은

점거농성 개시로부터 불과 25시간 만인 1월 20일 06시 30분 대테러진압을 전담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5개 제대 99명)해 강제진압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하였다.

참사 당일 기준 피해상황은 6명(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경찰 17명, 철거민 6명)이 부상(철거민은 골절 등 중부상을 기준으로 발표, 경찰은 경사자를 포함해 발표)을 당했다. 농성으로 인해 10명이 구속되었고, 8명이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후 이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개발사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과정에서 5명이 구속되었고, 120여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이어졌다.

2. 인권침해의 유형

1) 비례원칙¹⁶⁾을 벗어난 과도한 경찰권 남용

용산참사 당시 세입자들은 강제퇴거를 앞두고, 철거 예정의 빈 건물을 점거하

1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의 행사에서 준수하여 할 경찰비례원칙은,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합해야 한다는 '수단의 목적 적합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수단의 최소 침해의 원칙' 및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목적상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최소한도 내에서' 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고 주거 및 생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농성 시작 몇 시간 만에 36명의 농성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20개 중대 1600여 명과 경찰특공대 99명, 물대포 차량 4대 등을 동원했다. 그리고 철거 용역 50여 명과 하루종일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다가 만 하루만인 새벽에 대 테러 진압 목적으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건물 옥상에 투입해 진압하는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을 펼쳤다.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농성용 임시건물)에서 유류물질에 의한 대형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화학소방차도, 에어매트리스도 준비하지 않고 성급한 진압에만 몰두했다. 실제로 6명의 사망 이외에, 4층 건물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10여 차례의 수술을 반복하는 중부상을 당한 세입자도 있었다.

이는 경찰권 사용이 비례원칙을 벗어났으며, 목적에 비해 과도한 무력의 사용으로 진압을 전개해 사망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진압) 조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정문(2010.2)¹⁷⁾을 낸바 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김석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17) 인권위는 그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소방관들에게 화재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반면, 과도한 진압을 지휘하고 투입된 경찰은 무혐의 처분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는 “무전기 꺼 놔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만으로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 되었다)

2)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과 부상자에 대한 방치

용산참사는 과도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무력한 상태로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의 폭력행사 그리고 구금과 수사과정에서도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졌다.

당시 건물 옥상 위에 높이 8m의 망루(농성용 임시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망루에서 뛰어내려 생존한 철거민들의 경우,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경찰특공대는 무력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체포 연행하면서 곤봉과 군화발로 폭행하며 연행하였다.

또한 진압에만 몰두해 안전장치와 구급장비에 소홀했고¹⁸⁾,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금되었다.

18) 고공 농성자의 추락 등을 대비하여 건물 주위에 안전매트, 그물망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철거민들에 대한 마지막 연행이 이루어지던 7시 47분경까지도 안전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장치는 매트리스 달랑 1장?’ 용산참사 풀리지 않는 의혹, 쿠키뉴스 2009.1.21.)

3) 대책위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

2009년 사망사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개발사업의 전환을 촉구하는 대책위의 활동과정에서 대책위 집행위원장이었던 박래균 이종희 등 6명이 3~12개월간 구속되었고, 조희주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판결하였다.

대책위 관계자 외에도, 용산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며 추모대회 등 집회·시위 참가자 120여 명에게 52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소환과 기소를 남발하며 인권을 침해하였다.

4) 일반적인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용역폭력 방관 등

개발지역에서 용역폭력은 강제퇴거 즉, 빨리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된 폭력이다. 이러한 계획된 폭력은 대부분 처벌된다 하더라도 (물리적 폭행의 경우)단순폭행 혹은 (철거민들과)쌍방폭행으로 처리되고, 오히려 강제퇴거와 용역폭력에 맞선 철거민들의 저항이 업무방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연행, 기소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곤 한다.¹⁹⁾

19)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30일까지 강제퇴거와 관련한 검거된 인원(용산참사 경우 제외)을 비교하면, 철거민 및 관련자들의 검거가 111명인 것에 비해, 개발조합 및 용역의 검거인원은 14명에 불과했다.(국회 행안위 장세환 의원실 2011.10)

3. 경찰력 집행의 문제점

1)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임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까닭에 공격적인 진압이 예상되고 공격적인 진압은 그에 대한 대응의 수위를 고양시켜 진압과정에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

통상 과거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 진압방식에서, 경찰은 수개월 동안 공방을 벌이며 협상을 벌이며, 망루 내부 구조 및 상황을 파악하며 철거민들이 인화물질을 다 사용하고 지칠 때쯤 특공대를 투입해 왔던 것에 비하면 용산참사의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은 이례적인 진압작전이었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1. 19. 농성자들이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며, "예전에 없던 화염병이 난무하고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무작위로 투척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했다"고 주장함으로써²⁰⁾ 경찰특공대의 투입 이유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검경이 제시한 "화염병이 난무"하는 상황은 특공대의 남일당 진입이 개시된 20일 새벽의 상황이었으며, 특공대 투입이 결정된 19일 상황은 달랐다. 19일 경찰이 시간대별로 작성한 '정보상황 보고'와 무전 기록에 따르면 19일 일부

20)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 20. 용산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들이 도심지 한복판에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무차별로 투척하는 등 도심 테러를 벌여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1. 21. 경향신문 참조)

시간대의 대처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소강상태였다. 즉 농성자들이 경찰과 용역에 의한 물대포 진압에 맞서 물대포차나 경찰 및 용역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이들에게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진 것이 일부 도로에 떨어지거나 빗나가 세워둔 차량에 맞은 경우가 일부 시간동안 있기는 했으나 고의적으로 행인이나 도로에 무작위로 공격을 가한 사실은 없었고, 이마저도 19일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찰 정보상황보고에 의하면, 화염병이 투척되기 전부터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한 것이 드러나, 화염병 때문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경찰특공대의 현장 배치명령이 내려진 시점은 최소 화염병이 등장하기 1시간 전 이었다²¹⁾.

그렇다면 이를 두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야 할, 공익에 대한 긴박한 위험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매뉴얼>에는 화염병 시위와 고공농성에 대한 집행 매뉴얼이 있었으나, 용산참사 진압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① 퇴로를 확보하지 않은 토끼몰이 진압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과도한 전진시 부대가 고립될 수 있

21) 경찰청 정보상황보고 및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19일 오전 8시반~9시 사이 김석기 주재 회의에서 결정되어 지시되었고, 특공대 1개제대가 9시30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최초 화염병 투척은 9시30분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제해산시에도 시위대의 퇴로를 확보하고 무리한 추적을 금지”하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경찰은 망루의 1층에서 위층으로, 컨테이너를 통해 4층에서 아래층으로 동시에 진입함으로써 농성자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였고, 사건 당일 07:25경 망루 전체에 화재가 확대되는 순간까지도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계속됨에 따라 경찰특공대 대부분이 탈출한 이후에도 농성자들은 대피할 수 없었다.

경찰특공대는 오로지 망루 해체와 농성자들에 대한 공격만 집중했다. 농성 철거민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포, 그리고 망루 창문을 향해 뿌려지는 소화가스과 강력한 물대포, 망루 아래쪽과 컨테이너를 통한 양면 작전은 철거민들을 퇴로없는 사면초가 상태로 몰아넣었다.

② 화염병 소모 후 진압원칙 위배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화염병 투척시 산개대형 전개 후 상황에 따라 시위대가 화염병·돌 등을 소모하도록 유도하고, 화염병이 거의 소모되었다고 판단되면 좌우측 검거부대가 먼저 전진하며 검거작전을 전개하며, 여타부대는 뒤따라가며 엄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산참사의 경우 경찰이 1월 19일 12:30 현재 파악한 농성자들의 위험물이 화염병 120여 병으로 보고되었고, 1월 20일 05:30경 경찰특공대 진입 배치가 되자 농성자들이 빌딩 주변에 지속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였으며, 경력이 물포 살수로 소화를 하는 상황이었다. 매뉴얼 대로라면 이미 화염병의 투척이 시작되었고 오래지 않아 화염병이 소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진을 유도하며 시간을 끌어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었으나, 성급하게 남일당 진입 진입작전을 감행했다.

③ 고공 시위농성이나 유류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미비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시설점거 농성시 우발상황에 대비, 특수장비·안전장구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에어매트, 고가사다리 및 소방·조명차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위 또는 농성이 철탑, 다리, 건물옥상, 타워크레인, 조명탑 등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경우, 안전매트 신속 설치 및 구급차 등 배치로 응급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서 경찰은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으나,²²⁾ 현장에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남일당 건물 북쪽으로 3개의 안전매트를 설치했을 뿐, 다른 방면에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결국 1월 20일 07:26경 농성자 중 1인이 건물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또한 사전에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와 소화전을 준비해야 함에도 물포와 경찰특공대원의 개인소화기에 의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였다.

3) 1차 화재 시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강행된 2차 진입

경찰특공대의 진입이 시작된 후인 07:06경 망루 내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07:20경 2차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1차 화재시 경찰의 지휘무선에서 “망루 안에 불이 많이 나서 끄고 있으니 안에 있는 농성자들을 안전하게 체포하도록 유념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망루 내에 시너와 화염병 등의 위험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화재를 경험했으므로 재차 화재가 발생할 가

22) 서울지방경찰청, 1.20 「전철연」‘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농성자의 검거에만 몰두한 것이다. 이는 1차 화재 후 경찰특공대가 망루 해체를 위해 지붕을 뜯고, 컨테이너로 망루 윗면과 옆면을 수차례 타격하는 과정에서 망루 3층과 4층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등의 화재 징후를 간과한 데서도 알 수 있으며, 07:20경 망루 계단쪽 바깥 옥상에서 폭발과 함께 솟아오르는 불길에도 지휘무선에서는 재차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을 안전하게 체포하라”는 지시만 내릴 뿐이었다.

경찰특공대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망루 안 시너 냄새로 환각 증세까지 일어났고, 시너 냄새 탓에 묘한 기분이 들거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원들은 진입을 하자마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다. 한 특공대원은 “제가 지휘관이면 그 상황에서 보류하겠지만, 지휘관은 밖에 있어 상황을 몰라서 그런 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길이 솟아오른 2차 특공대 진입 전 특공대장과 특공대 1제대장의 무전 교신내용은 경찰이 안전 진압보다 신속 진압에만 중점을 뒀다는 것이 드러났다. 1제대장은 특공대장에게 “아직 멀었다. 저항이 심해 못 들어가고 잠잠해지길 기다린다”고 하자 특공대장은 “내가 올라갈까”라고 1제대장에게 신속한 진압을 압박했다.

또한 1차 진입 때 몇 번 큰 불길이 솟아 올라 2차 재진입을 준비하는 10여 분의 시간에 화재 안전 대책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특공대는 특별히 소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한 대원은 “망루 모서리의 함석을 뜯다가 2차 진입을 하라고 해 소화기도 다 떨어지고 소방호스 지원도 없이 방패만 들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4) 경찰 진압과정에서 철거용역들과의 합동작전

경찰은 1. 19. 경부터 외부세력 가세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사람들은 건물

과 골목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입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동작전을 펼쳤다.

용역들은 1. 1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맞은 편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을 향하여 물포를 직접 분사하여 폭력행위를 가하였고, 옥상에 배치 중이던 의경 6명 등 경찰은 폭력행위를 가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방패로 막아줬다.

뿐만 아니라 용역들은 1. 19.과 1. 20.경 남일당 건물 3층까지 점거해 페타이어를 태워 유독가스를 농성자들이 있는 위로 배출하기도 하였고, 현장 부근에서 경찰 방패처럼 보이는 “POLICIA” 적힌 방패를 들고 다니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였지만, 경찰은 용역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특공대의 남일당 건물 진입작전에서도 철거용역들이 경찰특공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한 것이 무전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²³⁾

경찰의 위와 같은 일련의 철거용역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 및 직무유기, 시위 진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하여 용역직원들과 합동으로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4.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앞서 살폈듯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서의 문제로 발생한 용산참사 사망사건은 업

23) 특공대가 컨테이너와 계단을 통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하는 하던 2009년 1월 20일, 오전 6시 29분 42초의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입니다."

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 사안에 대해 대법원 등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과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용산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 원인이었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설득과 대화과정 생략, 경찰특공대 투입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투입으로 극단적 상황을 초래, 화재발생 물질 완전 소진 전 진압, 유류화재에 대한 미대책, 안전매트 등 안전장비 구비 없는 등 진압과정 안전조치 미실행)가 성립한다. 또한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책임이 있다. 진압시 안전수칙 및 고도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 사망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경찰책임자에 대해 무혐의로,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경찰의 법적 책임을 면책했다. 이러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한 불처벌은 또 다른 공권력에 의한 피해들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용산참사 진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됐다.” 이 말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물대포 살수가 경찰 매뉴얼도 어긋난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없다며 말한 뻔뻔한 변명이다. 경찰의 진압 매뉴얼도 어긋나고 성급하고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으로, 하루아침에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는 경찰의 살인면허가 되어 또 다른 살인진압과 인권침해의 명분이 되어왔다.

특히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는, 특공대를 투입하는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지휘 책임자였음에도, “무전기 꺼냈다”, “진압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여론의 비난으로 사퇴(2009.2)했다. 그 후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05)를 거쳐,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2011.2)되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낙하산 사장(2013.10)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국회의원(2016.05 / 경북경주)이 되었다.

김석기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경찰의 공권력 폭력적인 남용에 대해 “여기까지 해도 용납하는 구나!”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내 앞길이 보장되는 구나!”하는 나쁜 교훈이되어, 집회시위에대한 경찰폭력은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5.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위해 밝혀야할 진실

용산참사의 경찰력 행사에 있어서 밝혀야할 진실의 핵심은, “왜 그리 성급하게 무리한 진압을 감행 했는지?”, “누가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을 지시했는지?”일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 경찰의 자체적 판단인지, 아니면 더 우선인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지가 경찰 스스로 밝혀야할 중요한 진실일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국민적 저항(‘광우병’ 촛불)에 부딪혀,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으로 잠재우려 했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촛불 이후 유난히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른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불법필벌’을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2년차를 앞둔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월 18일,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월 19일,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지으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대원칙과 토건개발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다.

청와대로서도 대통령의 원칙에 도전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좌시할 수 없었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로서도 이를 조기에 진압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의 이유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와 같은 해인 2009년 8월, 같은 방식의 특공대 투입을 통해 진압했던 평택 쌍용차 노동자들의 진압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은 “대통령께 직보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평택 외곽이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에 대한 특공대 투입은 대통령의 허락없이 가능했을까?

경찰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강제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욱 신중하게 진압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이전에도 경찰은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집회시위 진압 매뉴얼>에서 망루 농성을 진압할 때는 위험물질을 소진하게 하는 등 ‘인내진압’을 강조했다. 그런데 용산 망루농성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달랐다.

용산참사는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

가와 공권력의 범주는 규명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다. 뉴타운 사업 등 개발을 통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자본과 이를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뒷받침한 국가가 결탁하여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만 국가 법질서를 위반했다며 단죄 당해야 했다.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한다. 국가는 세입자인 철거민들을 국민으로 대우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경찰 공권력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가?

용산참사 9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용산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국가 폭력 피해자인 유가족과 철거민 생존자들은 불처벌된 김석기 등 책임자들의 승승장구에 더욱 고통을 호소하며, 2009년 1월 20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석기 등 책임자의 처벌과 참사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언제까지 사람의 목숨을 담보한 생존권 유린의 참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의 구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경찰 공권력의 남용을 비롯한 잘못된 국가의 정책과 시행 모두에서 그 책임 소재도 밝히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용산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입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용산참사 진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됐다.” 이 말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물대포 살수가 경찰 매뉴얼도 어긴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질책에 대해 한 변명이다.

경찰의 진압 매뉴얼도 어기며 성급하고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으로, 하루 아침에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는 경찰의 면죄부가 또 다른 살인진압과 인권침해의 명분이 되어왔다.

촛불의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게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개혁을 주문하고 있고, 경찰도 이에 대응해『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경찰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은, 정부와 경찰의 조치가 경찰의 셀프개혁 쇼가 아닌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내용 없는 사과를 보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며 발족한『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 분과>를 두어 △ 국가인권위 권고사안에 대한 분석·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집회관리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0년(2010.02) 국가인권위원회도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정문을 낸바 있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김석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무전기 꺼 냈다’며 발뺌한 김석기 뿐만 아니라 경찰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석기와 경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없었다.

이에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은, 경찰이 이번 기회에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찰개혁위원회』가 △용산참사를 경찰 인권침해의 대표사례로 조사, 기록화하고 △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밝힌다. 경찰의 개혁이 수사권만 받기위한 쇼가 아니라면, 대표적인 경찰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인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산참사의 사죄와 규명, 책임자 처벌 없는 ‘인권경찰’은 어림없다.

2017년 6월 26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생존 철거민 피해자 일동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

(1)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습니다.”

이 말을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다. “사과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과”는 도대체 사과라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지 않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작년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 동안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과를 거부해 왔다. 6월 20일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백도라지씨는 곧바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 “무엇을 잘못해 사과하는지는 빠져있다. 살인적인 시위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하라. 경찰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 환자, 환자 가족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을 시도해서 한 달 넘게 장례를 못 치르게 해 우리 가족을 괴롭힌 것, 시민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 행사해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²⁴⁾

폭력사태나 어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가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파악하고, 잘못된 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잘못된 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긴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수용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고 부르는데, 거창하게 이론적인 개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은 사람사는

24) 오마이뉴스, 백남기씨 딸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는 원격 사과", (2017.6.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35674&CMPT_CD=P0001 (검색 : 2017.7.2.)

세상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가장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것이다.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카메라 앞에서 숙인 고개는 어디를 향한 것일까. 무엇을 왜 사과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생략된 ‘거두절미 사과’는 흔히 궁지에 몰린 정치인들이 변신을 꾀할 때 쓰는 수법이다. 그런 사과는 피해자를 향한 사과가 아니며, 국민을 향한 사과도 아니다. 그런 식의 정치적 제스처로 행해지는 사과는 대개 자신의 권력적 지위와 기반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여 위기모면책이거나, 아니면 더 큰 권력자로부터 무엇인가의 혜택을 얻으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기만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2) 위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의의 절차가 오랜 기간 은폐되거나 누적된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수행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과거)적폐청산”이라고 부른다.

사실 경찰의 인권침해는 경찰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8대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단지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앞의 발제에서 언급된 경찰의 인권침해는 개별적인 수준에서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인권침해가 아니다. 그 사건들은 지배적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국가폭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그 배후의 정치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이며,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오히려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범죄로 단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법시스템은 국가폭력

사건 앞에서는 그 작동을 멈춘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국가폭력으로서 경찰폭력”이라 지칭하는 것이 보다 어울린다.

단지 8개의 사건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2017년 촛불혁명의 과업으로 적폐청산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최소한의 지점들을 보여준다. 그 시작이 진실규명이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2. 경찰폭력의 작동체계

1) 국가폭력으로서 경찰폭력

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폭력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폭력은 형법에 규정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정의하자면, 폭력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힘’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폭력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양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개 타인에 대한 권력적 통제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공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폭력은 그 속성상 권력, 지배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 국가의 탄생은 물리적 폭력의 국가독점을 의미한다. 시민 개인들의 사적인 폭력 행사는 범죄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개인의 폭력은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폭력사용을 독점하고 있다. 군대, 경찰, 형벌제도 등은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수단들이다.

이와 같은 폭력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방침이나 이데올로기로 혹은 제도화된 법에 기반하여 행해질 때 이를 ‘국가폭력’이라 부른다.²⁵⁾ ‘국가범죄’라는 개념도 사용된다. 국가범죄란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권력정치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생명이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말한다.²⁶⁾ 대개 군대와 경찰, 검찰, 정보기관이 국가폭력 내지 국가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된다. 제주4·3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은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국가폭력의 전형적인 사건들이며,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의하여 자행된 의문사사건들, 간첩조작사건들 역시 국가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국가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은 몇가지 공통적 특성이 존재한다. 첫째, 그것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된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거나 최소한 그 정체세력의 묵인과 동조 하에 행해진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둘째, 국가폭력은 오로지 결과지향적 목적에 의하여 자행된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에, 국가폭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강정에서, 밀양에서 경찰의 목표는 오직 해군기지 건설이나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방해를 억압하는 것에 두어졌으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나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목표는 청와대로 향하는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점거농성, 그리고 철도파업에서 경찰은 철저하게 파업의 분쇄라는 목표로 움직였다. 그 과

25) 김동춘,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3호, 2013, 115쪽.

26) 이재승,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제24호, 2003, 15쪽. 국가범죄에 대한 방대한 분석은 이재승, 국가범죄, 2011 참조.

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라든가 파업권 보장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 행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무력화된다. 셋째, 이런 국가폭력이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폭력을 행한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과지향적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했는가에 따라 승진과 포상이 뒤따른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경찰서장은 그 목표달성에 실패한 자가 되어 버린다.

물론 지금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비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이나 고문, 학살 등 노골적으로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이 함부로 자행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대신에 국가폭력의 구조는 더욱 합법성의 권력적 힘을 동원하면서 은밀하게 그러나 광폭으로 확장되어 왔다.

2) 국가폭력의 은밀한 지속을 위한 기반 - 사찰과 감시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의 시스템은 저강도 국가폭력의 지속적 투입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시찰제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경찰이 독립운동에 관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계승하여 해방 이후에도 남한 사회에서 좌익사범에 대한 사찰제도로 정착·발전되었으며,²⁷⁾ 이후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저항적 시민운동에 대한 사찰은 경찰의 정보부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7)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훈, “사찰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역사비평 제100호, 429-432쪽 ; 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 제11호, 2003, 145-153쪽 참조.

일제강점기의 요시찰제도와 고등경찰에 뿌리를 둔 정보경찰제도는 그 존재이유 자체가 사찰과 감시에 있다. 특히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지금도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²⁸⁾

3) 구조적 폭력 + 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 외에 우리는 법제도 속으로 구조화된 폭력을 말할 수 있다. 자본의 가공할 만한 위력도 그 자체로 폭력적이다. IMF 이후에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법 영역에서 합법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폭력의 승인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그 단적인 예가 된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 회사 측이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진압에 이어, 일부는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최종적으로 165명이 해고되었다. 5년만인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단순했다.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하니 회사측의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899호) 제14조 제3항.

사의 입장을 너그럽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쓰여 있다. 기업은 그저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을 한 순간에 정리해고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무한한 자유를 얻었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이건만 노동자는 그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초래된 위기인데도, 그 위험을 전가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는데도, 대법원은 ‘경영판단’이라는 논리로 그 상황을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그리고 이처럼 자본의 폭력이 법적으로 승인되면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모든 행동으로 불법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이 사례에서 국가폭력은 자본의 구조적 폭력을 승인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공적인 폭력 장치로서 법을 동원한 것이다.

구조적 폭력이 국가의 물리적 폭력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국가폭력의 또 다른 장면은 민중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저항폭력을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짓는 것이다.²⁹⁾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를 비롯하여 용산참사, 밀양의 송전탑반대운동,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반대운동 등에서 수없이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다. 2011년 ‘희망의 버스’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라는 거대자본의 폭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운동이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의 김진숙 지도위원은 309일 동안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희망의 버스’를 통해 자발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강제철거에 저항하면서 생존권보장을 외치며 남일당 건물의 옥상에 망루를 세운 철거민들에 대해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하여 단 하루만에 폭압적인 강제진압을 감행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

29) 김승환, “국가와 폭력”, 진보평론 53호, 2012, 284쪽.

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용산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은 망루농성 철거민들을 ‘도심테러범’이라고 지칭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명분으로 행해지는 강제철거의 반인권성과 폭력성은 언론에서도, 법정에서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부동산경기에 편승하여 건설자본은 재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정작 재개발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던 수많은 서민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쫓겨나야만 한다.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로 생존권박탈의 위기로 내몰린다.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법이 정한 보상금만으로는 다른 곳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은 각목 등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며 성희롱도 서슴지 않는다. 망루농성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재개발사업과 인권침해가 난무한 철거의 현장에서 생존권보장을 외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4) 상징폭력

물리적 폭력은 대개 상징폭력이 결합한다. 특히 국가권력의 작동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87년 이후에는 상징폭력의 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다. 반공주의에 기초한 ‘중북’ 낙인기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생산된 대표적인 상징폭력이다.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적 지배세력에 도전하는 비판적인 시민과 정치세력을 ‘좌익’, ‘빨갱이’로 낙인찍고 배척하는 정치적 실천의 중심을 형성해 왔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조작한 ‘간첩’,

‘빨갱이’, ‘용공분자’ 등은 북한이라는 상대를 정치 내부로 끌어들이며 ‘그들’을 ‘적’으로 둔갑시키는 지배전략이었다.”³⁰⁾

또 하나의 상징폭력 기제는 소위 법질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 만성적인 고용 불안, 개인 간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저항적 표현과 주장, 행동의 분출을 통제하기 위한 법담론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법질서 정책(law and order policy)’과 무관용주의이다. ‘법질서 정책’이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정과 시민의 저항이 사회질서의 붕괴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법치’를 강조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위 ‘법질서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표방한 바 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 검찰은 2008년 5월 27일 대검찰청 공안부 주재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집단행동 관련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① 무관용 ② 무폭력 ③ 무질서 추방의 3무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하면서, “폭력·불법 집회시위의 주동자 및 배후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반복 악순환 근절”의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런 정책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상징폭력의 기능은 아래의 세가지 차원에 걸쳐 있다. 첫째, 그것은 문화적 영역에서 대개 국가의 적나라한 폭력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그 국가폭력을

30) 한성훈, “국가권력과 정초적 폭력 : 증오의 정치와 추방된 시민”,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주최), 2013.8.27. 31쪽.

담론의 차원에서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상징폭력은 그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국가폭력과 저항행동’의 적대성의 근원이 된 사회문제 - 분단의 문제라든가, 용산참사의 경우 말우농성 철거민들을 도심테러범이라 지칭하는 순간 재개발과 주거권보장의 문제 - 가 민주주의적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차단된다. 셋째, 그럼으로써 상징폭력은 물리적·구조적 폭력을 어찌다 있을 수 있는 국가권력의 일탈사건이 아니라, 지배적 정치세력의 정치적 실천으로 일상화될 수 있는 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3. 경찰폭력의 진실에 다가가기 또는 진실 드러내기

1) 사법(司法), 취약한 도구

(1) 법정이라는 무대의 근본적인 한계

일반적으로 의혹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민·형사의 사법체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검찰의 수사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의 수단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후원 하에 자행된 경찰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서 사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살인죄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건, 모든 범죄사건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은 범죄성립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화’는 개인 행위자가 저지른 단편적인 불법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세력과의 연관성이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검찰의 수사과 재판에서 충분한 팩트가 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2) 역동원의 힘

국가폭력의 범주로 분류되는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은 집권 정치세력의 조장·비호·묵인 하에 자행된 사건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 정치세력이 건재한 한, 경찰폭력의 수행자나 책임자를 법정에 소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찰폭력을 자행한 정치세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폭력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킨다. 법을 동원하는 힘에서 시민과 국가기관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법질서 이데올로기’와 ‘무관용주의’ 하에서 (형)법은 정치적 억압기구로서의 성격을 탈색시키면서 동시에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법질서 이데올로기 하에서 시민들의 의식적인 사회적 저항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도전으로 표상된다.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 대한 시민의 저항운동이 분출될 때마다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규정들은 대개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여기에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이 결합되면 저항과 충돌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배후세력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단적인 예로, 2008년 촛불집회 이후에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집시법 외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를 보인다. 도로를 점거하거나 도로상에서 행진을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 2009

년 민변이 발간한 “촛불백서”에 의하면, 2009.6.15. 기준으로 촛불집회 관련 정
식재판사건의 피고인 627명 중 551명(88%)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었다고
한다.³¹⁾ 집시법위반의 혐의만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높은 형량을 확보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미치는 위축효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집시법상 야간시위의 단순참가자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현행범체포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진실규명’의 사회적 실천

(1) 총체적이고 역사적이어야 하는 진실규명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과거청산에서 ‘진실’을 네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① 사실적 또는 법과학적인 진실(factual or forensic truth), ②
개인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진실(personal and narrative truth), ③ 사회적 진실
(social truth), ④ 치유·회복적 진실(healing and restorative truth).³²⁾ 첫
번째 차원의 ‘사실적 또는 법과학적인 진실’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획득되는 객
관적인 정보와 증거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 차원인 ‘내러티브적 진실’은 피해자들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촛불백서」, 2009, 30쪽.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가 함께 적용된
피고인이 495명, 일반교통방해죄만 적용된 피고인은 52명이었다. 한편 627명 중 집시법만 적용
된 경우는 60명에 불과하였다.

32)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1998), 110쪽 이하. 김상
숙, “과거청산을 위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분
야를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한국사회사학회 발간) 제104집, 2014, 337쪽에서 재인용함.

이 자신의 언어로 피해의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것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주체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이다. 세 번째 차원의 ‘사회적 진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의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네 번째로 말하는 ‘치유·회복적 진실’은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acknowledgement)’으로 완성된다.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사실의 단편을 해명한다거나 확인하는 수준의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진실은 사실의 단편을 퍼즐맞추듯이 조립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총체적 사실의 조각들을 파헤쳐야 하지만, 그렇게 확인된 사실들을 놓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회적 가치에 입각하여 사건의 실체를 사회적·역사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규정짓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폭력의 진실규명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지향된 법적 프레임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경찰폭력의 배후에 은폐되어 있는 권력적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규명의 작업은 분명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경찰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민주주의와 평화적 공동체의 진전을 위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성찰에 따라 향후 어떠한 사회적 개혁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점과 가치의 중요성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조갑제는 해경 123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정의(正義)를 진실 위에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

실을 세우려 하면, 진실은 수단이 되어 인간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³³⁾ 그는 “정의는 개별적 사실들의 과학적, 입체적 재구성으로 드러나는 진실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⁴⁾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진실은 가치중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밝혀진 팩트들을 재구성하여 하나의 역사적·사회적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일정한 가치를 내포한 관점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행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조갑제는 이 말을 통해 진실규명에서 ‘관점’과 ‘가치’가 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려버린다. 동시에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다.

결국 진실규명은 궁극적으로는 ‘관점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용산참사사건에서 진짜 인권침해의 가해자·범죄자가 누구인가는 재개발정책의 강제퇴거조치가 갖고 있는 반인권성을 조명할 때 제대로 드러난다.

3) 경계를 넘어서 질문하기

경찰폭력은 언제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행사된다. 그 경계는 어디일까. 법적 관점에서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은 자칫 진실규명의 사회적 지평을 축소해 버릴 위험이 있는 협소한 질문이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합법성의 폭력이 행사되는 지점을 문제삼아야 한다. 법의 폭력성,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폭력은 법치주의 속에 내장되어 있다.

33) 조갑제, “김경일 정장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를 비판한다!”, 이동욱, 「연속변침 -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보고서」, 조갑제닷컴, 2015.4., 645쪽.

34) 조갑제, “독후기 : 화가 나서 쓴 책, 그러나 억울한 사람들을 줄여주는 책”, 이동욱, 앞의 책, 627쪽.

법(치)의 폭력성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적 정치영역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본 그리고 법조집단의 동맹으로 형성된 거대한 권력이 신자유주의 질서의 영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시와 폭력을 일상화하는 수단으로 법치를 동원한다. 민주적 공동체 형성과 인권보장에 기여하기는커녕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근원에서부터 해체해 버리며, 지배질서의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사회적 저항의 주체들을 끊임없이 ‘법공동체’ 외부로 밀어내면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럼으로써 재차 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와 자율성의 발현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왜소하게 만든다. 따라서 데리다의 말을 인용하면,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³⁵⁾ 법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파괴함으로써만 정의의 요청에 다가갈 수 있다.

이대훈 교수는 시민불복종으로서 직접행동을 다룬 논문에서 유명한 영국의 전폭기 파손행동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하였다 ; “1996년 4명의 영국여성이 오랜 준비와 계획 끝에 인도네시아로 판매가 예정되어 있던 영국제 호크전폭기가 보관된 군사기지에 몰래 잠입했다. 성공적으로 전폭기에 접근한 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망치로 전투기의 앞부분 레이더장치를 파손시켜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전폭기의 인도네시아행을 지연시켰다. ... 이 사건을 심의한 리버풀 형사법원은 배심재판으로 이들을 전원 무죄석방시켰다. 그 이유는 당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정권이 동티모르에서 제노사이드 전쟁(대규모 무차별살상을 야기하는 전쟁)을 전개

35) 자크 데리다(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37쪽.

하고 있었고, 영국산 무기가 그 더러운 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반인륜적 목적에 사용될 무기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행동은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끼를 들고 행인을 살해하려는 사람을 공격해서 살인을 저지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해석상 어찌면 당연한 판결이었다.”³⁶⁾ 그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운동이 합법성의 틀에 갇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이 사례를 인용했는데, 우리가 경찰 폭력의 진실규명에서 합법성의 틀에 갇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같은 차원의 인권적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보듯이, 시민 주체들의 저항운동은 대개 시민불복종운동 혹은 보다 적극적인 직접행동으로 발현된다. 아렌트는 “시민 불복종은 뜻있는 시민들이 정상적 통로로는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호소가 거부당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일을 주장하여 추진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³⁷⁾ 시민의 저항행동은 단순히 처벌과 희생을 감수하는 도덕적인 희생성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새로이 구성하는 능동적인 힘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이 길의 목적상 메타 권리로서 저항권 내지 직접행동의 사회적 승인에 관한 논의를 깊게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다. 대신에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파업의 권리조차 승인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간략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한다.

36) 이대훈,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 :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 세계 제3호, 2003, 118쪽.

37) 한나 아렌트 지음, 김동식 옮김, 공화국의 위기, 1979, 도서출판 두레, 85면.

파업은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파업하기 참 힘든 나라이다. 노동현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의 권리는 철저하게 탄압받고 그 기본적인 권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 노동권에 대한 통제는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노동현장에서의 징계 조치 등 다양한 층위에서 자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하게 되어 노동현장에 경찰의 물리적 진압과 통제를 불러오고 이후에는 다수의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실천)을 지배하고 있는 공식은 “파업 = 원칙적 범죄행위”라는 등식이다.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은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다소간 제한하는 전향적인 판결³⁸⁾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파업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될는지 예측하기 힘들고, 경찰이나 정치세력은 판례의 애매한 기준 덕분에 여전히 파업에 대해 공권력의 통제와 폭력적 진압을 행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2013년 철도파업은 변경된 판례의 기준에 따라 무죄판결로 종결되었다. 나중에 무죄로 판명된다한들, 경찰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법체계 하에서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폭력의 불법성이 승인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파업이 적법했는가 여부는 파업노동자를 범죄자로 단죄

38)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하는 재판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파업에 대한 폭력적 진압의 경찰폭력에 대한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중요하게 드러내야 할 지점은 노동자의 파업을 일단 유죄로 추정하는 법논리를 동원하여 경찰이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진압하는 것의 폭력성이다. 파업의 적법성을 뛰어넘는 질문들을 던질 때,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회적 진실규명에 다가설 수 있으며 파업의 현장에서 경찰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회적 인권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4. 경찰폭력사건의 진실규명과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청산은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책임자의 공적인 사과, 배상, 사회적 기억의 제도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다. 지난 30여년간 과거청산 운동에서 누누이 강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의 경우에도 진실규명은 올바른 청산을 위한 시작점이다. 그것은 결코 과거사건에 연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실의 공동체 삶 속에 투영해가는 현재적 작업이다.³⁹⁾

프랑스의 인권변호사 루이 주아네가 기초한 과거청산의 국제인권기준⁴⁰⁾은 청산의 주요 원칙으로, ①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알 권리, ② 국가의 기억

39) 이재승, 앞의 글, 16쪽.

40) 인권운동사랑방/민주법학편집부(역),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민주법학 제11호, 1996, 162-180쪽.

할 의무, ③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보장, ④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 ⑤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사법처리의 보장(공소시효, 사면, 망명 등의 제한), ⑥ 국가의 배상 의무, ⑦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찰폭력사건의 진실규명과 청산의 작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진실규명과 적폐청산의 목표와 방향

경찰폭력사건의 진실규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적폐청산과 제도적 개혁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진실규명과 인적 청산 및 제도적 청산은 한뫼음의 연결된 과정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인적 청산

인적 청산은 경찰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 경찰폭력의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부천서성고문사건, 김근태 등 고문피해사건에 관련된 몇몇 경찰들을 처벌한 전례가 사실상 전부이다. 2005년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 2명이 경찰폭력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하였지만, 당시 진압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2명의 농민을 직접 가격한 기동대원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청장직에서 사퇴한 허준영은 곧이어 공기업 시장으로 영전하였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600일이 된 오

늘까지도 수사결과는 오리무중이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퇴임했고, 구은수는 경찰공제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는 2009년 2월 사퇴한 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밀양 주민들에 대한 경찰폭력의 지휘책임자였던 이철성은 바로 지금 경찰청 수장으로 청와대를 향해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불처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시민에 대한 폭력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배세력의 욕망에 부응한 경찰간부가 더 많이 출세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구조이다. 경찰조직의 피라미드 꼭지점에 올라선 경찰청장이라는 지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홍구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의 과거청산 운동은 너무나 얌전하고 길들여진 운동이었다.”고 말했다.⁴¹⁾ 그는 과거청산위원회들이 조사권한이 미약했다거나 공소시효의 걸림돌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처벌을 내세우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해 처벌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해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었고, 나름대로 ‘승고’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진상규명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것은 처절한 자기기만일 뿐이었다.”⁴²⁾ 과거청산이나 적폐청산은 회귀나 복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불연속을 보증하는 단절이어야 한다.

41) 한홍구, “이명박 시대의 과거청산과 역사논쟁”, 역사와 현실 69호, 2008, 7쪽.

42) 한홍구, 앞의 글, 8쪽.

인적 청산은 그래서 중요하다.

인적 청산은 경찰폭력의 행위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찰폭력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지원한 공직자와 정치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최소한 그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제도적 청산

인적 청산 못지않게 제도적 청산도 중요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7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회대응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⁴³⁾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살수차의 사용요건과 절차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직사살수의 금지, 최루액 등 위해성분 혼합살수의 금지, 영상 10도 이하의 경우 살수차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⁴⁴⁾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직사살수나 혼합살수를 금지하겠다고 분명하지 선언하지 않았으며, 살수차의 ‘원칙적 미사용’이라는 수사 뒤에 숨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그의 답변은 ‘수용하겠다’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수용’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그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고

43) 머니투데이, '인권' 초점 경찰 업무보고...살수차 제한 방안은? (2017.7.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0411220596797&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검색 : 2017.7.4.)

4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6.12.1.)

한다.

살수차의 사용기준 등등 경찰력 사용의 인권법적 한계를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경찰폭력사건의 진실규명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적폐청산의 과제는 다음의 세가지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경찰의 장비사용이나 물리력 행사의 관행과 조치는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고착과 이동차단, 카메라부터 들이대고 보는 채증, 차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형식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그 헌법적·인권적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살수차의 사용은 이에 속한다. 정보인권의 과도한 침해할 수반하는 것도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의 지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경찰 공구너력의 허용한계와 기준을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저항과 항의의 행동에 대한 경찰의 개입지점과 행동강령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우너칙에서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진실규명 및 청산의 방식과 주체

(1) 그동안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활동은 거의 대부분 특별법에 기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사법을 통한 진실규명은 개별적, 단편적, 행위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총체적인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7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은 박근혜로 상징되는 구체제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

다. 2016/17년 겨울, 1,600만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뜨겁게 메웠던 촛불혁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에 기반하여 경찰의 물리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을 최대한으로 억압하는 공안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다.

공안기구 개혁과 적폐청산은 “총체적 관점”이 중요하다. 공안통치의 총량과 그 작동메카니즘에 대해 종합적인 비판적 문제제기와 청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안기구의 인권침해 진실규명과 개혁’을 다룰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창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경찰폭력 내지 - 폭을 확대하여 - 공안기구의 적폐청산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냉정하게 말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2)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전개한 전례가 있다. 경찰청은 2004년 민관합동으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팀을 꾸렸으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1979년), 서울대 깃발사건(1985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경찰과 관련 과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청산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와 동력을 공안기구의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역량의 한계, 단임제의 짧은 임기,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과거청산의 과제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위에서 사회화하지 못한 채로 과거청산의 목표를 단순하게

정치적 남용의 배제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라는 ‘선의’의 관점에서 협소하게 인식하였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의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과 적폐청산에 일단 시동을 걸었다. 6월 19일 국정원은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출범시켰다. 국정원개혁위 산하에는 조직쇄신 TF와 적폐청산 TF가 설치되고,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대선개입(‘땃글 사건’), 극우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순실 측근의 인사 전횡,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 내지 정치개입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12대 사건’의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⁴⁵⁾ 적폐청산 TF는 검사 출신의 조남관 감찰실장이 주도하며, 파견검사 3명이 합류하고 있다. 언론보도만 보면, 국정원개혁위가 12개 의혹사건의 진상조사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조사를 지시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개혁위, 특히 외부위원이 조사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는 아닌 듯하다.

검사 출신의 감찰실장과 파견 검사가 주도하는 적폐청산 TF 방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것은 인권침해의 주범이 진상조사를 주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의 과정을 사회화하기는커녕 더욱 밀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

45) 한겨레,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출범 (2017.6.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9342.html#csidxb7820181baa962c836d2aa65aee0237 (검색 2017.7.3.)

폐로서 공안통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검찰 출신들이 국정원의 의혹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조사하기보다는 진실규명의 과제를 권력기관 간의 야합과 정치적 타협의 장으로 변질시켜 버릴 위험마저 크다.

경찰청은 6월 16일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를 출범시켰다.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인권분과를 두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경찰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의지나 계획은 그나마도 없는 상태이다.

(3)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같은 방식은 용인하기 어렵다.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적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진실규명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11월 2일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에서는 ‘국정원진실위’라 함)도 경찰청 과거사위처럼 법적 기반이 없는 채로 기관 내부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관장 소속의 임의기구로 설치·운영되었다는 점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국정원진실위의 경우 2004년 8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국정원에서는 원장과 기조실장이 참석하고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주법연 등 주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국정원과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국정원진실위는 우선 공개된 자료의 검토와 과거청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90여 건의 의혹사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7개 의혹사건⁴⁶⁾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2차로 노동·언론·사법·간첩·학원·정치의 6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정원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⁴⁷⁾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관 내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정치적 여건과 운동역량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국정원진실위의 케이스는 진실규명과 적폐청산의 과정이 사회적 투명성과 공론화를 담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어떤 방식이 되건 간에, 위원회 구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제기하는 경찰폭력사건들은 그 가해자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여전히 존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법의 제정을 앞둔 2005년에 김동춘 교수는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은 집권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위험과 가해자 우호세력이 과거청산의 주체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⁴⁸⁾

2006년 출범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회 선출 8명(상임 2), 대통령 지명 4명(상임 2),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30일로 강제종료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 선출 5명(상임 2), 유가족 추천 3명(상임 1), 대한변협 추천 2명(상임 1), 대법원 추천 2명(상임 1)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세력 간의 나눠먹기 구조였다. 물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진실규명을 원하지 않는 정치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구색을 갖춘다는 명분 하에 진실규명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대변자가 위원회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46) 7대 의혹사건은, 김형욱 실종사건, 김대중납치사건,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KAL기 폭파사건이었다.

47)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총론, 308-309쪽.

48)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8권, 41쪽.

러한 위원회 구조가 위원회를 얼마나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는지를 세월호특조위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폐단으로 진실규명의 사회적 논의가 폄하되거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3)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화

진실규명과 청산의 작업은 그 목표달성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밝힌 진실 구성의 4단계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 진화위, 의문사위 등 각종 과거청산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의 성과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도 대체로 1단계 또는 2단계의 진실에 접근하는 정도였다. 두 번째 단계의 진실 구성을 넘어서서 국가폭력의 사회적 진실을 공론화하는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가해·피해의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국가폭력이 자행된 배경이나 상황을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공론구조 속에서 공유하지 못한다면 적폐의 유산은 결코 청산될 수 없다.

2007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백서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참여 욕구를 억압하고 국가안보를 우선시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큰 희생을 초래하는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시국사범에 대해 정권안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확대적용하여 보안사범을 양산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고 스스로 반성하였다.⁴⁹⁾ 그러면서 당시 경찰청 과거사위에서 내놓은 권고는 ‘실질적인 인권교육 시스템 정립’,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찰위원

회의 기능 강화'와 '인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록물관리의 개선'이 전부였다. 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부역의 역사를 경찰 내부의 인권의식의 부재의 문제로 치부하는 협소한 인식도 문제이거니와, 권고의 수준이 지극히 추상적이라 실질적으로 아무런 청산과 개혁조치를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애초에 경찰 내부의 셀프개혁과 '변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보고서가 나오고 한달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경찰의 위와 같은 반성은 온대간에 없이 사라졌다. 추상적이고 내용도 없는 과거사위 권고였건만 그나마도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 이런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 추진방식이 진실규명의 과정을 사회화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한데도 가장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홍구 교수가 말한 '암전함'을 넘어선 '허약함'이었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폭력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그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함께 공유하는 절차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49) 경찰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백서』, 2007, 413쪽.